Vol.6 WINTER 2010 | The fourth quarter of the year ISSN 2092-947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PRIMARY ISSUES

미 국	美 상원사법위원회, 저작권 침해사이트 폐쇄 법안 승인	8
	美 지방법원, 대인관할권에 의거 저작권 트롤(copyright troll) 소송 각하	11
	美 할리우드, 印 발리우드 간 저작권 보호 협정 체결	14
	[연방관보(FR)] 美 저작권청, 저작권 계약 종결업무규정 개정 착수	24
일 본	日 총무성, 불법저작물 유통 방지 위해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 개정 검토	35
	日, 인터넷 TV방송 수신기 '로쿠라쿠' 에 대한 저작권 침해 공방 가열	42
중 국	中, 불법저작물의 전국적 단속 강화를 위한 행동강령 발표	50
	中 국무원, 정부기관의 불법 SW 이용방지를 위한 기관별 지침 제시	54
유 럽	英 고등법원, 뉴스 헤드라인도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판결	64
	佛 저작권 3단체, 유튜브社와 저작물 이용보상금 협약 체결	72
	유럽의회,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 결의안 통과	74
국제기구	WIPO, 저작권의 예외규정 및 인접권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마련 착수	80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 한 · 미 FTA의 조속한 비준 촉구	83
ZOOM-IN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상 UCC 삭제통지의 남용을 막기 위한 요건	88
	프랑스 정부의 '당근과 채찍' 저작권 보호 정책에 대한 소고	94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COPYRIGHT PROTECTION CENTER

Vol.6 WINTER 2010 | The fourth quarter of the year ISSN 2092-947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PRIMARY ISSUES

미 국	美 상원사법위원회, 저작권 침해사이트 폐쇄 법안 승인	8
	美 지방법원, 대인관할권에 의거 저작권 트롤(copyright troll) 소송 각하	11
	美 할리우드, 印 발리우드 간 저작권 보호 협정 체결	14
	[연방관보(FR)] 美 저작권청, 저작권 계약 종결업무규정 개정 착수	24
일 본	日 총무성, 불법저작물 유통 방지 위해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 개정 검토	35
	日, 인터넷 TV방송 수신기 '로쿠라쿠' 에 대한 저작권 침해 공방 가열	42
중 국	中, 불법저작물의 전국적 단속 강화를 위한 행동강령 발표	50
	中 국무원, 정부기관의 불법 SW 이용방지를 위한 기관별 지침 제시	54
유 럽	英 고등법원, 뉴스 헤드라인도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판결	64
	佛 저작권 3단체, 유튜브社와 저작물 이용보상금 협약 체결	72
	유럽의회,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 결의안 통과	74
국제기구	WIPO, 저작권의 예외규정 및 인접권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마련 착수	80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 한 · 미 FTA의 조속한 비준 촉구	83
ZOOM-IN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상 UCC 삭제통지의 남용을 막기 위한 요건	88
	프랑스 정부의 '당근과 채찍' 저작권 보호 정책에 대한 소고	94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COPYRIGHT PROTECTION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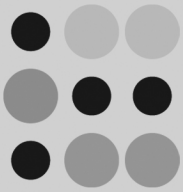

GLOBAL COPYRIGHT PROTECTION

Vol. 6
WINTER 2010

목차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미국 | USA

* 美 상원사법위원회, 저작권 침해사이트 폐쇄 법안 승인 ····· 8
* 美 지방법원, 대인관할권에 의거 저작권 트롤(copyright troll) 소송 각하 ····· 11
* 美 할리우드, 印 발리우드 간 저작권 보호 협정 체결 ····· 14
* 美·中, 합법 SW 이용 및 저작권 보호 위한 합의 도출 ····· 16
* 美 연구도서관협회, 도서관의 저작권 보호 쟁점에 대한 보고서 발표 ····· 18

美 저작권 관련 입법동향 모니터링 [연방관보(FR)]

* 美 저작권청, 저작권 계약 종결업무규정 개정 착수 ····· 24
* 美 저작권청, 1972년 이전 녹음물 보호에 연방저작권법 적용문제 검토 ····· 27

일본 | JAPAN

* 日 NHK, 유튜브 사이트에 자사 방송물 사용 허가 ····· 32
* 日 총무성, 불법저작물 유통 방지 위해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 개정 검토 ····· 35
* 日, 인터넷 TV방송 수신기 '로쿠라쿠'에 대한 저작권 침해 공방 가열 ····· 42
* 일본서적출판협회, 전자출판시 저작권 협의를 위한 표준계약서 발표 ····· 44

중국 | CHINA

* 中, 불법저작물의 전국적 단속 강화를 위한 행동강령 발표 ····· 50
* 中 국무원, 정부기관의 불법 SW 이용방지를 위한 기관별 지침 제시 ····· 54
* 中, 온라인 불법저작물 연례 단속활동 '검망행동(劍网行動)' 실시 ····· 56
* 中 국가판권국, 저작권의 질권 등기에 대한 법령 공표 ····· 59

유럽 | EUROPE

※ 英 고등법원, 뉴스 헤드라인도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판결 ····· 64
※ 英 인포마텔레콤앤미디어, 전 세계 실연권료 분배현황 발표 ····· 68
※ 英, 비영리단체의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해 저작권료 징수제 도입 ····· 70
※ 佛 저작권 3단체, 유튜브社와 저작물 이용보상금 협약 체결 ····· 72
※ 유럽의회,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 결의안 통과 ····· 74

유럽

아시아

국제기구 |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WIPO, 저작권의 예외규정 및 인접권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마련 착수 ····· 80
※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촉구 ····· 83

오세아니아

ZOOM-IN

※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상 UCC 삭제통지의 남용을 막기 위한 요건 ····· 88
※ 프랑스 정부의 '당근과 채찍' 저작권 보호 정책에 대한 소고 ····· 94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북미 지역

미국

美 상원사법위원회, 저작권 침해사이트 폐쇄 법안 승인 | 8 |

美 지방법원, 대인관할권에 의거 저작권 트롤(copyright troll) 소송 각하 | 11 |

美 할리우드, 印 발리우드 간 저작권 보호 협정 체결 | 14 |

美·中, 합법 SW 이용 및 저작권 보호 위한 합의 도출 | 16 |

美 연구도서관협회, 도서관의 저작권 보호 쟁점에 대한 보고서 발표 | 18 |

美 저작권 관련 입법동향 모니터링 [연방관보(FR)]

美 저작권청, 저작권 계약 종결업무규정 개정 착수 | 24 |

美 저작권청, 1972년 이전 녹음물 보호에 연방저작권법 적용문제 검토 | 27 |

美 상원사법위원회, 저작권 침해사이트 폐쇄 법안 승인

미국 상원사법위원회(Senate Judiciary Committee)는 2010년 11월 18일, 온라인 상에서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온라인 침해 및 위조 방지법(COICA)」을 승인함. 동 법안은 미국 법무부가 불법사이트 관련 도메인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음

美 상원사법위원회, 불법사이트 제재 위한 「온라인 침해 및 위조 방지법(COICA)」 승인

o 미국 상원사법위원회(Senate Judiciary Committee)는 2010년 11월 18일, 온라인 상에서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온라인 침해 및 위조 방지법(Combating Online Infringement and Counterfeits Act; COICA)」을 승인함.

- 미국 상원사법위원회는 이번 승인으로 불법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함.
- 동 법안은 미국 상원사법위원회의 패트릭 레이히(Patrick Leahy) 위원장에 의해 2010년 9월 20일 발의[1]되어, 2010년 9월 23일에 열린 상원사법위원회의 의제로 상정·검토된 후 2010년 11월 18일 승인을 받음.

o 패트릭 레이히(Patrick Leahy) 위원장은 미국의 경제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모든 상원의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한 것이라고 언급함.

-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오린 해치(Orrin Hatch) 의원은 국제상거래의 핵심인 인터넷을 온라인 침해자들이 불법적 수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함.

1) 「온라인 침해 및 위조 방지법(COICA)」의 발의 내용은 「Global Copyright Protection Vol.4, Autumn(2010), pp.8-9」를 참조할 것.

「온라인 침해 및 위조방지법(COICA)」, 법무부에 저작권 침해사이트 폐쇄 권한 부여

o 「온라인 침해 및 위조 방지법(COICA)」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해외 도메인에 대해 대물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불법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됨.

-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폐쇄되거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며, 법무부장관은 동법의 실행지침을 제공하고 집행기관 간 업무조율을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함.

o 저작권 침해사이트와 관련한 해외 도메인에 대한 소송은 콜럼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에서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은 저작권 침해사이트가 ① 미국 내 거주자의 침해를 유발하는지, ② 사이트에 소개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미국인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③ 침해에 고의성이 있는지, ④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달러로 표시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

o 한편, 도메인에 대한 소송과 관련, 법원의 명령을 받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결제대행업체, 광고업체 등은 침해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법원 명령에 따라 행동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함.

o 동 법안에 대해 미디어 업계에서는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전자프론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및 컴퓨터통신산업협회(Computer & Communication Industry Association)는 동 법안이 인터넷의 공개성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 향후 검열법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법안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한 자에 대한 계정 정지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제133조의2 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중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OSP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조

www.govtrack.us, 2010.11.16
www.govtrack.us/congress/bill.xpd?bill=s111-3804&tab=summary, 2010.11.16
www.theglobalipcenter.com/pages/gipc-issues(GIPC), 2010.11.16
en.wikipedia.org/wiki/Combating_Online_Infringement_and_Counterfeits_Act, 2010.11.16

美 지방법원, 대인관할권에 의거 저작권 트롤(copyright troll) 소송 각하

최근 미국에서 라이트헤이븐(Righthaven)社 등 저작권 침해 소송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법무법인(이하 '저작권 트롤(copyright troll)')이 등장하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이 급격히 증가함.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프론티어재단(EFF) 및 기타 시민단체들은 저작권 트롤의 무차별적 소송을 각하하도록 법정조언서를 제출하였으며, 미국 지방법원은 2010년 12월 대인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의 미적용을 근거로 저작권 트롤의 소송을 각하함

美, 저작권 침해 소송을 목적으로 한 영리단체 등장

o 미국음반산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약 2천만 명의 불법 음악파일 공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미국음반산업협회의 소송 목적은 배상금 획득보다는 불법파일 공유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불법파일 공유를 감소하기 위함이며, 실질적으로 소송비용의 1.7%만을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으로 회수함.

※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는 미국의 음반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음악저작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관련 법규, 규제 및 정책을 감시·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함.

o 이에 반해, 미국의 법무법인 라이트헤이븐(Righthaven)社는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사들인 후 이를 기반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통해 이익을 창출함.

- 라이트헤이븐社는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50건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50건 이상 합의를 통해 해결함.
- 합의금액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미국의 라스베가스선(Las Vegas Sun)誌에 의하면 합의금의 범주가 건당 약 2,185 ~ 5,0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o 라이트헤이븐社의 소송은 저작권 침해 소송이라는 점에서 미국음반산업협회의 소송과 유사하지만, 저작권자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닌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특허 트롤(patent troll)[2)]과 유사함.

※ 특허 트롤(patent troll)

2001년 인텔의 사내변호사였던 피터 데트킨(Peter Detkin)이 소송상대방을 지칭하여 사용했던 용어로서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특허권을 사들이고 해당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주된 이윤을 창출하는 단체

※ 이하에서는 라이트헤이븐社와 같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통한 이윤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를 '저작권 트롤(copyright troll)'이라고 지칭함.

o 저작권 트롤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통한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다음의 3가지 전략[3]을 활용하고 있음.

① 저작권을 침해하는 블로그 또는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사전 경고 또는 중지명령 없이 즉각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저작권 침해자에게 소송에서 회피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

② 특정지역의 법원에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동시에 저작권 침해혐의로 기소하여 변호사 선임을 어렵게 하거나, 소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소방식을 일반화하여 유사한 침해를 일괄적으로 처리함.

③ 저작권 침해자들은 미국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손해배상금에 대한 위험부담보다는 1,500～3,500달러 범위 내에서의 합의를 바란다는 점을 이용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개인정보가 대중에게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을 주요 소송대상으로 함.

전자프론티어재단, 저작권 트롤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에 법정조언서 제출

o 저작권 트롤에 의한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전자프론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은 미국 시민단체인 퍼블릭시티즌(Public Citizen) 및 미국시민자유연합(Amercian Civil Liberties Union)과 협조하여 저작권 트롤의 소송을 각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법정조언서(amicus brief)를 판사에게 제출함.

- 법정조언서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 및 법정관할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됨.

2) Todd Klein, eBay V. Mercexchange and KSR Intl Co. V. Telefelx, Inc. : The Supreme Court Wages War Against Patent Trolls, 112 Penn St. L. Rev. 295, 295-96 (2007)
3)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A Field Guide to Copyright Trolls (visited Dec. 27, 2010)

o 전자프론티어재단은 저작권 침해 소송의 원고가 피고에게 어떠한 경고나 통보 없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익명의 이용자들의 IP주소를 조회하도록 요구한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저촉되며, 피고들이 기소의 무력화 및 신원공개에 대해 저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조항으로,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자유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해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美 지방법원, 대인관할권의 미적용을 근거로 저작권 트롤의 소송을 각하

o 2010년 12월 미국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은 저작권 침해 소송의 피고들에게 대인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이 적용되지 않았기에 라이트헤이븐社의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함.

※ 대인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은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의 법원이 피고에 대해 갖게 되는 재판관할권을 의미함.

o 또한 소규모 블로그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공정이용(fair use)이라 볼 수 있기에 고의적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힘.[4)]

※ 국내에서도 최근 저작권 트롤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이용하여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2008년 7월 「소년법 - 조건부기소유예제도(소년법 제49조의3)」를 적용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도입하였음.

(EFF, 2010.12.16)

4) Nate Anderson, Judge tells copyright troll Righthaven no, it's fair use(visited Dec. 27, 2010)

美 할리우드, 印 발리우드 간 저작권 보호 협정 체결

미국 로스앤젤레스시(市)는 인도 발리우드(Bollywood) 대표단과 영화제작 및 저작권 보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을 2010년 11월 10일 체결함. 이번 협정에서 양측은 인도영화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인도영화위원회(Los Angeles-India Film Council)를 로스앤젤레스시(市)에 설립하기로 합의함

美 할리우드, 印 발리우드와 저작권 보호 위한 협정 체결

o 미국 로스앤젤레스시(市)(이하 L.A.)와 인도 영화계는 저작권 보호 및 영화제작 분야에서 할리우드(Hollywood)와 발리우드(Bollywood)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agreement)을 2010년 11월 10일 체결함.

※ 발리우드(Bollywood)는 인도 뭄바이(Mumbai)의 옛이름인 봄베이(Bombay)와 할리우드(Hollywood)의 합성어로 인도 뭄바이의 영화산업을 지칭함. 최근 할리우드와 발리우드는 영화 '내 이름은 칸(My name is Khan)', '인크레더블 러브(Incredible Love)', '칸테(Kaante)' 등 다수의 작품을 공동제작함.

- 본 협정의 체결을 위해 인도영화연합(Film Federation of India)과 인도영화텔레비전제작자협회(The Film and Television Producers Guild of India) 등이 발리우드를 대표하여 협정문에 서명함.
-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저작권 침해방지 환경조성, 영화 공동제작과 합작투자 및 발리우드 영화의 미국시장 배급을 위해 협력하기로 함.

o 한편, 할리우드와 발리우드는 영화저작물 보호를 위해 지난 2010년 3월 저작권침해방지연합(Alliance Against Copyright Theft)을 결성하고, 극장 내 캠코더 촬영 단속 및 저작권 침해방지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바 있음.

인도영화 제작 촉진을 위해 로스앤젤레스인도영화위원회 설립

o 이번 협정에서 양측은 인도영화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인도영화위원회(Los Angeles-India Film Council)를 L.A.에 설립하기로 합의함.

o 동 위원회는 인도 영화제작자들이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제작할 경우 20~25%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영화제작자의 미국비자 취득 및 인도영화의 미국시장 배급을 위해 노력하게 됨.

(MPAA, 2010.11.10)

美·中, 합법 SW 이용 및 저작권 보호 위한 합의 도출

미국과 중국은 2010년 12월 14일과 15일, 워싱턴 D.C.에서 제21차 미중상업무역공동위원회(JCCT) 회의를 개최함. 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쟁점사항들을 논의하였으며, 중국 측은 합법 SW의 이용 촉진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적 해석(judicial interpretation)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美·中 상업무역공동위원회, 지적재산권 보호 등 무역관련 쟁점현안 논의

o 미중상업무역공동위원회(U.S.-China Joint Commission on Commerce and Trade; JCCT)는 2010년 12월 14일과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및 정부조달 규제 등의 무역관련 쟁점사항들을 논의함.

- 이번 회의에서 미국 상무부의 게리 로크(Gary Locke) 장관과 미국무역대표부의 론 커크(Ron Kirk) 대표, 중국 국무부의 왕치산(Wang Qishan) 부총리가 공동의장으로 참석함.

o 중국은 합법 SW 이용 촉진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논의사항들을 이행하기로 동의하였으며, 향후 지적재산권 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공표함.

- 양국은 상기내용의 준수여부를 어떻게 입증할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美·中, 합법 SW 이용 촉진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 논의

□ **SW 예산관리체계 확립 및 합법 SW 이용 촉진**

o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정부차원의 합법적 SW 이용 촉진을 위해 SW 예산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정부기관의 합법 SW 구매를 위한 추가 예산을 할당하기로 함.

o 또한, 민간기업의 합법 SW 이용 촉진을 위한 '중국정부와 기업 간 SW 이용 파트너십 구축 프로젝트'에 30개의 공기업을 참여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힘.

□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적해석 마련

o 중국 사법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제한 등 다양한 쟁점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력 하에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적 해석(judicial interpretation)을 마련하기로 함.

□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보호

o 양국은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권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및 정보를 교류하겠다고 밝힘.

- 특히 중국은 온라인 상의 학술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출판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접수·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

(DOC, 2010.12.15)

美 연구도서관협회, 도서관의 저작권 보호 쟁점에 대한 보고서 발표

미국 연구도서관협회(ARL)는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학술연구도서관에서의 공정이용에 대한 과제(Fair Use Challenges in Academic and Research Libraries)' 보고서를 2010년 12월 20일 발표함. 동 보고서는 공정이용 및 저작권 예외규정에 대해 학계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를 담고 있음

美 연구도서관협회, 도서관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실무자 인터뷰 수행

o 연구도서관(research library)[5]은 연구, 교육 및 학습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저작권 보호 관련 업무수행 기준이 없어 연구도서관의 사서들(librarians)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이에 미국 저작권법에 명시된 공정이용(fair use) 조항 하에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관련 업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다음의 이유로 공정이용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원만치 않았음.

① 미국 법원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공정이용 조항을 사례별로 다르게 적용하여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왔음.

② 미국 저작권법이 피침해 저작물 당 최대 15만 달러에 달하는 법정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있어, 적극적 공정이용의 적용을 기피하게 됨.

※ 공정이용 조항은 19세기 미국 판례법에 의해서 발전되었으며 1976년 연방저작권법에서 명문화 되었음. 공정이용 조항은 네 가지 기본적인 고려사항들, 즉 '이용의 목적과 성격', '이용되는 저작물의 성격',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중요성',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이용이 공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법원은 위의 4가지 고려사항 중 '시장에 대한 영향력'에 비중을 적게 두는 경향을 보임.

5) 심층 연구자료를 다루는 도서관(대학도서관 등)을 의미함.

- 다만, 미국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규정이 교육기관에까지 적용되는 일은 드물며, 연방법의 면책규정 및 미국 저작권법 제504조(c)(2)의 침해구제 조항에 의한 기본적인 보호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美 저작권법 제504조는 침해구제에 관한 조항으로써, (c)(2)는 법정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음.

o 한편, 다큐멘터리 제작 및 미디어 교육 등의 타 분야에서는 공정이용의 모범사례를 지정하여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이에 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RL)[6]는 도서관에서의 공정이용 조항 적용문제 등에 대해 실무자 의견을 조사하고, '학술연구도서관에서의 공정이용에 대한 과제(Fair Use Challenges in Academic and Research Libraries)' 보고서를 2010년 12월 20일 발표함.

- 본 조사를 위해 미국 연구도서관의 사서 6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함.

o 향후 연구도서관협회는 조사결과 검토 및 공정이용 적용에 대한 논의를 거쳐 법률 자문단의 협조 하에 모범사례를 정립할 예정임.

연구도서관 사서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명확한 공정이용 기준 필요

□ **도서관 사서들이 저작권 보호 관련 의사결정 담당**

o 연구도서관 사서들은 연구·교육·학습을 지원하고 소장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도서관의 기본업무 수행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의 이용여부에 대한 자체적 결정을 내려야 함.

- 대부분의 대학교수들은 수업목적의 저작물 이용은 공정이용에 포함될 것으로 과신하고 있기에, 이를 검토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음.

- 대학의 고문변호사들은 도서관의 저작권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저작권 업무에 비중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음.

6) 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RL)는 북미 지역 126개 연구도서관으로 이루어진 비영리단체임. (www.arl.org)

o 한편 연구도서관 사서들은 저작권법 교육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업무수행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공정이용 또는 기타 저작권 제한규정을 고려하여 저작물 이용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소송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극적 업무수행을 하고 있음.

o 현재 사서들이 업무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는 '위험관리전략(Risk Management Strategies)'에는 저작권 침해여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 저작물 이용을 보류하라고 안내하고 있음.

□ **도서관에서의 공정이용 적용여부 검토**

o 연구도서관의 사서들은 ① 학생들의 자료이용 관리, ②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③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④ 디지털자료 접근 허용, ⑤ 도서관 자료의 보존, ⑥ 도서관 상호대출 관리, ⑦ 장애인의 자료이용 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 공정이용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o 학생들의 자료이용 관리와 관련, e-리저브 시스템(e-reserve system)을 통한 학습자료 공유에 있어 자료의 내용, 분량 및 이용빈도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함.

※ **e-리저브 시스템(e-reserve system)**

교수진이 수업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선별하여 도서관에 컬렉션(collection)을 만들어 두면, 학생들이 단기간 대출을 통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리저브 시스템(reserve system)임. 또한 이러한 자료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작하여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접속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함. 일반적으로 코드를 부여하여 해당 수업과 관련이 있는 교수진 및 학생들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열람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음.

- 현재, 사서들은 저작권 문제 관련 적합성 여부가 모호한 경우 e-리저브 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자료등록 제한, 결정 보류 또는 타 부서에 권한 위임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o 특히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증대를 위해 소장자료를 디지털화 하는 경우 저작자 미상의 자료 및 복수 권리자가 있는 자료에 대한 저작권 처리 문제가 명확하지 않음.

- 사서들은 소장자료를 어느 수준까지 디지털화 할 수 있는지, 또한 디지털 파일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을 얼마나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음.

o 또한, 훼손 위험이 있거나 마모된 자료의 사본 제작과정에서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미국 저작권법 제108조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 사본의 제작·보존을 허용하고 있으나, 동 조항과 공정이용의 관계가 불분명함.
- 자료가 마모되기 이전의 사본제작이 공정이용 조항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 불명확함.

o 도서관 상호대출 시스템에 있어서 도서관들은 통상 '저작물의 신기술 이용에 대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 Works)'의 「제5의 규칙(Rule of Five)」을 따르고 있으나, 도서관 간의 디지털 자료공유와 관련된 공정이용 적용의 문제는 명확하지 않음.

※ '제5의 규칙(Rule of Five)'은 도서관 상호대출시 타 도서관에 ① 5년 이내 발행된 동일 정기간행물의 기사(article)를 1년에 5개 이상 요청할 수 없으며, ② 저작권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특정 간행물에 대해 1년에 5회 이상 대출요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지원을 위한 기준 필요**

o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과 관련, 사서들은 기준이 불명확한 공정이용 규정보다는 간단한 답변을 제시하는 제121조의 적용을 선호함.

※ 미국 저작권법 제121조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규정으로써 시각장애자 및 기타 장애자를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사서들은 미국 저작권법 제121조 규정에 의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차선책으로 공정이용의 적용여부를 검토해왔음.

o 그러나 일부 도서관 사서들은 소속기관이 미국 저작권법 제121조에 규정된 인가기관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o 사서들이 장애인들을 위해 파일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자료 판매처와의 협의 및 제작 파일의 재이용 여부 등의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 있음.

o 또한,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전자파일 중 일부는 변형이 어렵도록 설계된 경우가 있으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아직 불분명함.

공정이용 모범사례 제정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등 해결책 필요

o 인터뷰 수행 결과, 도서관 실무자들에게 공정이용 및 기타 저작권 제한·면책 규정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이로 인해 사서들은 저작권법 위반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극적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다음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저작권 판단을 위한 업무 지체, 임무 불이행 및 서비스 지연이 발생함.
- 사본 제작 지연으로 인한 자료 손상을 방치함.
- 디지털 소장자료 등에 대한 대중의 열람 기회를 박탈함.
- 공정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 장애인 이용자 및 기타 이용자들에 대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o 인터뷰 대상자들은 공정이용이 합리적 이론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알고 있으나, 대다수가 다음과 같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정이용의 적용여부 판단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
- 각 분야에 따라 공정이용 조항이 다르게 적용됨.
- 공정이용은 소규모 작업에만 적용 가능함.

o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처리 관련 문제점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결책이 필요함.

① 공정이용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는 공정이용 모범사례가 만들어져야 함.

② 사서들이 저작권 관련 결정을 함에 있어 연구도서관 및 소속기관의 지지가 필요하며,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과 도서관 내 저작권 관련부서 신설이 필요함.

③ 자료 계약시 공정이용에 대한 조항을 명확화 함.

④ 주요 학술연구서비스제공자(ProQuest社 등) 또는 발행자들과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을 위한 논의가 필요함.

(ARL, 2010.12.20)

美 저작권 보호 관련 입법동향 모니터링 [연방관보(FR)]

다음의 내용은 美연방정부 각 기관의 동향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FR)에 게재되는 저작권 보호 관련 주요 발표(announcement), 고시(notice), 규정 초안(proposed rules), 개정안(amendments), 확정규칙(final rules and regulations) 등을 모니터링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모니터링

美 저작권청, 저작권 계약 종결업무규정 개정 착수

미국 저작권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자, 법정상속인 등이 이용허락 및 이전(transfers) 계약을 종결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종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종결통지서 사본을 미국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 등록하도록 규정함. 미국저작권청은 종결통지서 등록업무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질의서를 2010년 11월 26일 고시하였음

美, 연방저작권법 상 종결권 규정을 통해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

□ **저작권법 상 종결권 규정의 취지 및 적용 쟁점**

o 연방저작권법 제203조는 1978년 1월 1일 이후의 저작권 이용허락(licenses) 및 이전(transfers)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자, 법정상속인(heirs), 유산수령자(beneficiaries) 등에게 기존의 저작권 계약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종결권)를 부여하고 있음.

- 제203조에 따른 계약(허락)의 종결은 계약일 후 35년이 되는 해의 마지막 날로부터 기산(起算)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언제든지 행사될 수 있음.

※ 본 종결권의 기준시점인 1978년 1월 1일은 1976년 개정저작권법의 효력일임.

o 종결권(termination rights)의 취지는 저작자와 상속인 등에게 경제적 보상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저작물이나 유언에 따른 이용허락에는 적용되지 않음.

o 한편, 연방저작권법 제304조 (c)항과 (d)항은 1978년 1월 1일 이전의 저작권 이용허락 또는 이전(transfers)에 대한 종결권을 규정함.

- 제304조 (c)항에 따른 이용허락의 종결은, 저작권의 최초 취득일로부터 56년이 되는 해의 마지막 날 또는 1978년 1월 1일 중에서 더 늦게 도래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허락을 종결할 수 있음.

o 종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종결통지서(notice of termination)의 사본을 미국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 등록해야 함.

- 미국저작권청은 종결통지서 등록과 관련, 업무규정의 개정을 위한 질의서를 2010년 11월 26일 고시함.

美 저작권청,
종결권의 등록업무
규정 관련 개정 착수

□ 이용허락과 창작시점 간의 공백에 따른 종결권의 적용방법

o 미국저작권청은 이용허락이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이용허락 대상 저작물이 1978년 1월 1일 이후 창작된 경우, 종결권을 어떻게 적용할지의 여부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구하는 질의서를 2010년 3월 29일 고시한 바 있음.

o 이에, 대부분의 답변서는 저작물의 창작일에 따라 종결권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

- 위 사안에 대한 종결권 적용의 근거로, ① 관련 저작물이 창작될 때까지 이용허락은 시행될 수 없고, ②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권리는 사실상 저작물에 귀속하는 것으로 그 권리의 이전시 중요한 것은 저작물의 창작일이라고 설명함.

o 미국저작권청은 197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창작시점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저작물의 창작일에 따라 종결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서 내용에 일부 동의한다고 밝힘.

o 그러나, 종결통지서 등록에 대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용허락이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종결통지서 사본의 등록거부권을 미국저작권청이 가지는 것으로 규정함.

-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에게 판단을 맡기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됨.

□ **종결통지서 등록과 관련한 저작권청의 업무 개정안**

① 시점의 공백으로 인한 미국저작권청의 종결통지서 등록거부권 명시

- 저작물의 이용허락 집행일이 1978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 저작권청은 종결권의 효력발생요건인 통지서 사본 등록을 거부할 권한을 가짐.

②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미국저작권청의 등록 거부권 명시

- 이용허락 집행일이 1978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법정 기한에 속하지 않는 종결 효력일인 경우, 잘못된 종결 통지시기 또는 종결 효력일 이후에 종결통지서를 등록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미국저작권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로 미국저작권청이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Federal Register, 2010.11.26)

美 저작권청, 1972년 이전 녹음물 보호에 연방저작권법 적용문제 검토

녹음물은 연방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고 주법(state law)으로만 보호를 받다가, 미국 의회가 녹음물에 관한 법안을 제정하면서 1972년 2월 15일 이후 고정된 녹음물만이 연방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음. 그러나 녹음물에 대한 권리 및 이용 제한과 관련, 주법보다는 연방저작권법이 더 명확한 보호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미국저작권청이 주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녹음물을 연방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서를 2010년 12월 20일까지 접수함

美, 녹음물 고정시기에 따라 주법 또는 연방저작권법 적용

□ 현행 녹음물의 저작권 보호 방식

o 미국에서 고정된 녹음물(fixed sound recordings)은 연방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고 주법(state law)으로만 보호를 받다가, 의회가 녹음물에 관한 법안을 제정하면서 1972년 2월 15일 이후에 고정된 녹음물만 연방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음.

- 1972년 이전의 녹음물은 여전히 주법으로 보호를 받음.

※ 녹음물(sound recordings)은 일련의 음악, 구술 등 음이 고정되어 제작된 저작물을 의미함. 다만, 음을 수록한 유체물(디스크, 테이프, 또는 기타 음반 등)의 특성과 상관없이 영화나 기타 시청각저작물에 수반되는 음은 포함하지 않음.

o 현재 미국에서 1972년 이전 녹음물의 경우 형법, 민법, 불공정경쟁법 및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등의 다양한 주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1972년 이후 녹음물은 연방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음.

□ 주법에 따른 녹음물 저작권 보호의 단점

o 주법에 의해 녹음물을 보호함에 있어서 첫째, 주법들 간의 내용 및 적용규정의

차이로 인해 녹음물의 이용행위 및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일관된 적용이 어렵고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함.

- 녹음물에 대한 권리 및 이용제한과 관련, 주법보다는 연방저작권법이 더 명확한 보호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o 둘째, 주법으로 녹음물을 보호함에 따라 그 보호기간이 2067년 2월 15일까지로 과도하게 연장되어 사실상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해당하는 녹음물이 존재하지 않게 됨.

※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은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보호를 위한 국제협정이 존재하지 않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o 셋째, 주법 적용의 모호성과 과도한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해, 1972년 이전 녹음물의 보존과 이용자의 접근을 위한 법적 권한이 불명확함.

- 연방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제한이 없는 한 녹음물의 보존과 접근을 위해 필요한 복제 및 배포 행위에 대한 합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美 저작권청, 1972년 이전 녹음물을 연방저작권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착수

o 이에, 미국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1972년 2월 15일 이전에 고정된 녹음물을 연방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문제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o 미국저작권청은 1972년 이전 녹음물의 ① 보존 및 접근문제, ② 연방저작권법의 보호로 인한 경제적 영향, ③ 보호를 위한 요건 및 헌법적 고려사항, ④ 1972년 이전 녹음물 중 특정 조건의 녹음물만을 보호할지 여부 등에 관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2010년 12월 20일까지 접수하였음.

(Federal Register, 2010.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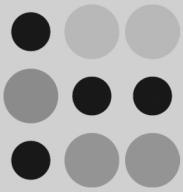

GLOBAL COPYRIGHT PROTECTIO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아시아 지역

일본

日 NHK, 유튜브 사이트에 자사 방송물 사용 허가 | 32 |

日 총무성, 불법저작물 유통 방지 위해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 개정 검토 | 35 |

日, 인터넷 TV방송 수신기 '로쿠라쿠'에 대한 저작권 침해 공방 가열 | 42 |

일본서적출판협회, 전자출판시 저작권 협의를 위한 표준계약서 발표 | 44 |

日 NHK, 유튜브 사이트에 자사 방송물 사용 허가

구글(Google)社는 2010년 12월 6일 NHK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의 유튜브 이용자들이 NHK社의 특정 방송물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함. NHK는 권리자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휴대폰 등을 통해서도 해당 방송물 시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임

日 NHK, 구글社와 방송저작물 이용 라이선스 계약 체결

o 구글(Google)社는 2010년 12월 6일 NHK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유튜브(Youtube) 사이트에 'NHK 프로그램 콜렉션' 코너를 개설함.

o 이번 계약 체결로 일본의 유튜브 이용자들은 'NHK 특집' 등의 방송물을 무상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되었음.

- NHK의 동영상을 유튜브로 볼 수 있는 것은 일본 내에서만 가능함.

o 방송물을 웹상으로 공개할 때에는 방송사, 작가, 배우, 일본레코드협회 등에게 각각 허락을 받아야 했기에, 저작물 사용 허가에 대한 처리문제가 이번 제휴 성사의 관건이 되었음.

o 현재까지는 PC를 통해서만 시청이 가능하나, 향후 권리자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도 방송물 시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임.

o NHK는 향후 콘텐츠를 확대하여 '프로젝트X 도전자들(プロジェクトX 挑戦者たち)', '오늘의 요리(きょうの料理)', '타메시떼갓뗀(ためしてガッテン)' 등을 추가하겠다고 밝힘.

NHK가 유튜브에 방송저작물을 게시하는 전략적 배경

o NHK가 유튜브를 통해 자사 방송물을 게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① NHK를 시청하지 않는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방송물을 홍보함으로써 시청자 층을 확대하고자 함.

②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채널에 NHK 콘텐츠를 공개함으로써 시청자들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실험의 의미가 있음.

③ NHK는 지난 방송물을 유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NHK 온디맨드(NHKオンデマン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유튜브에 'NHK 온디맨드'로 서비스 중인 방송물의 일부분을 편집, 공개함으로써 동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높일 수 있음.

④ 이번 제휴는 구글(Google)社의 저작권침해대응시스템인 「콘텐츠 ID 프로그램(コンテンツIDプログラム)」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 **콘텐츠 ID 프로그램**(コンテンツIDプログラム)
>
> 구글(Google)社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2007년 10월 14일부터 운용함. 이 시스템은 권리자가 유튜브에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면 그 동영상의 특징을 추출한 ID파일을 생성하고, 생성된 ID파일을 이용하여 불법동영상을 탐지함.

〈그림 1〉 「콘텐츠 ID 프로그램」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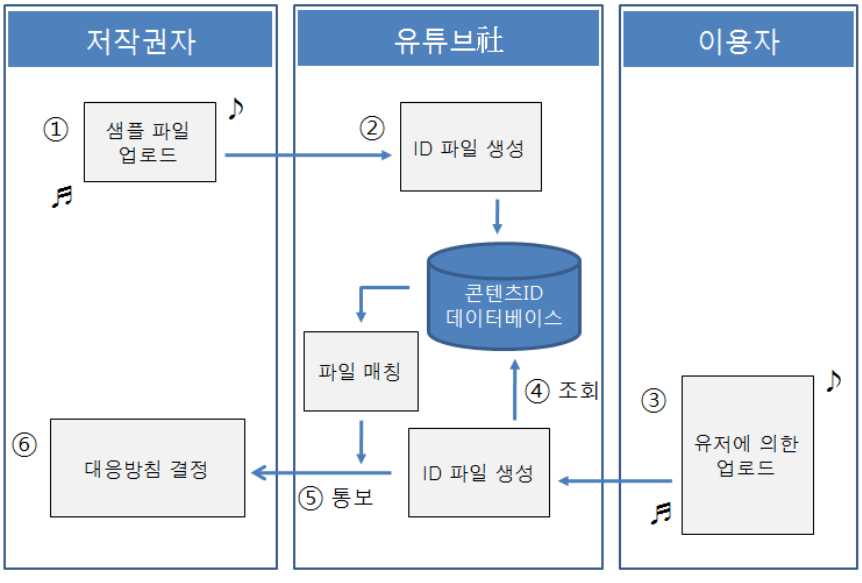

※ 참조

www.itmedia.co.jp/news/articles/1012/06/news089.html, 2010.12.6
www.itmedia.co.jp/news/articles/1012/06/news089.html, 2010.12.6
internet.watch.impress.co.jp/docs/news/20101206_412181.html, 2010.12.6

Global Copyright Protection

日本

日 총무성, 불법저작물 유통 방지 위해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 개정 검토

일본 총무성의 '이용자 관점 ICT서비스에 관한 제문제 연구회' 내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 검증을 위한 워킹그룹'은 2010년 11월 30일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 개정 검토를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저작물 유통 방지를 위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의무규정 및 발신자 정보공개 문제 등을 논의함

日 총무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저작권 침해 방지 의무에 대한 법률 검토

o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2010년 5월 21일 '2010 지적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2010)'을 발표하고, 온라인 상 저작권 보호체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본 총무성에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법률 제137호)」의 개정 검토를 요청함.

※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은 불법저작물 유통 방지를 위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 '2010 지적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畫2010)'
>
> 37항. 프로바이더에 의한 침해대책 조치의 촉진(단기 · 중기) - 담당 : 총무성
> "…현행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을 검증하여, 실효성 담보를 위한 제도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2010년 내에 결론을 얻어 사후조치를 강구한다."

o 이에 따라, 총무성 내 '이용자 관점 ICT서비스에 관한 제문제 연구회(利用者視点を踏まえたICTサービスに係る諸問題に関する研究会)'는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 검증을 위한 워킹그룹(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検証WG, 이하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2010년 11월 30일에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의 개정방안을 논의함.

- 본 워킹그룹의 검토는 2011년 3월까지 마무리 될 예정임.

※ '이용자 관점 ICT서비스에 관한 제문제 연구회'

새로운 서비스 및 신기술을 활용한 정보유통의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보호 원칙을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일본 총무성은 2009년 4월 상기 연구회를 출범하고 다양한 과제에 대해 구체적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음. 본 연구회는 현재 '청소년 인터넷 워킹그룹(青少年インターネットWG)',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 검증을 위한 워킹그룹(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検証WG)',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워킹그룹(電氣通信サービス利用者WG)', '스팸메일 대응방안 검토를 위한 워킹그룹(迷惑メールへの對応の在り方に關する檢討WG)'을 운영하고 있음.

日 총무성,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 개정을 위한 검토사항 공개

1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의 적용범위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유해정보

o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은 전자정보 유통과 관련해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음란물과 같은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취급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현재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위법·유해정보에의 대응 등에 관한 계약약관 모델조항(違法 · 有害情報への対応等に関する契約約款モデル条項, 2006년 11월)」 및 총무성의 '모바일 필터링 원칙' 등에 따라 개별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사회적 법익 침해 정보

o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권리침해 정보만으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는 동법의 대상이 되지 않기에, 이에 대한 취급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법익

형법은 인간의 공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익을 보호하며, 형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이익을 '법익(法益)'이라 함. 형법이 보호하는 법익에는 개인적 법익(생명, 신체, 인격, 명예, 재산 등), 사회적 법익(통화·문서에 대한 신뢰, 교통의 안전 등), 국가적 법익(국가의 안전, 국가기밀, 민주적 기본질서 등)이 있음.

□ 위법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형사상 책임

o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 제정 당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위법정보의 유통을 인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형사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았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형사책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음.

o 그러나, 동법의 제정 후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형사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7]이 있었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법에 의해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하지만,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의 축조(逐條)해설에 '단순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위법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형사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형사상의 면책규정을 법률에 두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임.

2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의 시행 가이드라인

□ 송신방지조치 관련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o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은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유무(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기에, 그 시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함.

7) 東京高裁平成16(2004년 6월 23일) 및 名古屋高裁平成19(2007년 7월 6일)

※ 일본 온라인 권리침해 관련 가이드라인 협의회

①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 가이드라인 검토협의회(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カイドライン等に關する檢討協議會)'

o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온라인 상의 정보유통에 의한 권리침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의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2002년 2월 설립된 협의회로, 일본 정부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저작권자, 인터넷 단체들로 구성됨.

o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 가이드라인 검토협의회'는 2002년 5월 24일 온라인 정보유통에 의한 권리침해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著作權關係ガイドライン)' 및 '명예훼손·프라이버시 관련 가이드라인(名譽毀損・プライバシー關係ガイドライン)', 2007년 2월에 '발신자 정보공개 관련 가이드라인(發信者情報開示關係ガイドライン)을 발표함.

o 상기 가이드라인에는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및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권리자의 송신방지조치 요청에 대한 대응절차 등이 제시됨.

② '인터넷 지적재산권 침해품 유통방지협의회(インターネット知的財産權侵害品流通防止協議會)'

o 인터넷 경매사업자 및 저작권자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 지적재산권 침해품 유통방지협의회'는 '인터넷 지적재산권 침해품 유통방지 가이드라인(インターネット知的財産權侵害品流通防止ガイドライン)'을 발표하고, 권리자 및 인터넷 경매사업자가 취해야 할 행동기준을 제시함.

③ '파일공유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대책협의회(ファイル共有ソフトを惡用した著作權侵害對策協議會)'

o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및 저작권자로 구성된 '파일공유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대책협의회'는 「파일공유 소프트웨어 상의 저작권침해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ファイル共有ソフトを惡用した著作權侵害への對応に關するガイドライン)」을 발표하고, 관련단체에 계몽메일을 송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수행함.

3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의무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삭제의무 발생 요건

o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권리침해 정보를 삭제해야 할 경우'를 언급하지 않고 민법에 위임하고 있으나, 민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권리침해 방지 의무

o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은 위법정보의 유통을 인지하지 못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라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8]이 있음.

o 또한, 동법 제3조에서는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와 관련, 위법정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음.

4 발신자 정보의 공개

□ 발신자 정보의 공개요건

o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 제4조 제1항에 근거, 다음의 경우 발신자 정보의 공개청구가 인정됨.

ⓐ 침해정보의 유통에 의해서 해당 공개청구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 발신자 정보가 해당 공개청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기타 발신자 정보를 공개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상기 사항 중 ⓐ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9]이 있었음.

□ 발신자 정보 공개요청에 관한 가처분

o 가처분명령으로 발신자 정보가 공개되면 이를 되돌릴 수 없으며, 발신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시 엄격한 판단이 요구됨[10].

8) 지적재산전략본부 콘텐츠강화 전문조사회 - '인터넷 상의 저작권침해콘텐츠 대책에 관한 워킹그룹' 보고서 :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콘텐츠 대책에 대하여(インターネット上の著作権侵害コンテンツ対策について (報告))」, 16면, 2010
9) 지적재산전략본부 콘텐츠강화 전문조사회 - '인터넷 상의 저작권침해콘텐츠 대책에 관한 워킹그룹' 보고서,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콘텐츠 대책에 대하여(インターネット上の著作権侵害コンテンツ対策について (報告))」, 24면, 2010
10) 총무성전기통신이용환경정비실 外,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 - 축조해설과 가이드라인(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逐条解説とガイドライン－)」, 55면

o 그러나, 최근의 소송에서 IP주소 및 타임스탬프(time stamp) 등의 발신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가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있기에, 소송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상의 삭제통지 제도

o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상의 삭제통지 제도를 일본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11]이 제기됨.

※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상의 삭제통지 절차

1998년 제정된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등을 두고 있음.

저작권자로부터 삭제통지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권리침해 정보를 삭제 후, 발신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함. 이에 대응하여 발신자가 삭제 반대통지를 보낸 경우 저작권자에게 반대통지의 사본을 송부하게 되며, 권리자가 수령 후 일정기간 내 발신자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해당 정보를 재게시 해야 함. 이 절차를 따른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o 그러나,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에만 한정한 제도로써, 이 제도를 명예훼손 등에 적용한 경우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됨.

o 또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에는 삭제통지 남용 및 부당한 삭제통지에 대한 제도적인 방지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일본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음.

o 현재 일본은 '발신자 정보 공개청구권'을 마련하고 발신자가 익명으로 정보를 발신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삭제통지 절차를 도입하게 되면 발신자의 익명성을 지킬 수 없기에 발신자 정보 공개청구권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됨.

11) 총무성, 「인터넷 상의 위법 · 유해정보에의 대응에 관한 검토회 최종보고서(インタネット上の違法有害情報へのにする討最終取りまとめ」, 45면, 2009

□ 발신자 정보의 공개범위

o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에는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발신자 정보에 대해 '발신자의 성명, 주소 및 기타 발신자 확인을 위한 정보로써 총무성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제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음.

※ 발신자 정보의 공개범위에 대해 총무성령으로 정한 사항

ⓐ 발신자 또는 침해정보 송신과 관련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발신자 또는 침해정보 송신과 관련한 자의 주소
ⓒ 발신자의 전자메일 주소
ⓓ 침해정보 관련 IP주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이용하는 전자통신설비에 기록된 침해 시점

□ 발신자 정보 공개청구의 주체

o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은 '특정 전자통신에 의한 정보유통에 의해 권리가 침해된 자'는 발신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o 그러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은 제3자도 발신자 정보의 공개가 필요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예를 들어, 학교가 보관하는 학생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경우 등).

▣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은 저작권자가 권리침해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자의 신상정보를 법원서기(law clerk)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우리 측에 요구한 바 있음.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h)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소명하고 획득된 정보의 사용출처를 밝혀 법원서기에게 정보제출을 명하는 소환장(subpoena)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総務省, 2010.11.30)

日, 인터넷 TV방송 수신기 '로쿠라쿠'에 대한 저작권 침해 공방 가열

일본디지털가전(日本デジタル家電)社는 인터넷을 통해 일본 TV방송을 해외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로쿠라쿠(ロクラク)'라는 기기를 개발하여 2005년부터 대여·판매를 실시함. 이에 9개 민간방송사 및 NHK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에서 저작권 침해, 2심에서는 저작권 미침해로 판결됨에 따라 추후 최고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침해여부를 가릴 예정임

日 방송사, 인터넷 TV방송 수신기 '로쿠라쿠(ロクラク)'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o 일본디지털가전(日本デジタル家電)社는 일본 TV방송을 해외에서 시청할 수 있게 하는 '로쿠라쿠(ロクラク)'라는 기기를 개발하여 2005년부터 대여·판매함.

※ '로쿠라쿠(ロクラク)'는 모(母)기계와 자(子)기계 체제로 운영되는 하드디스크레코더로써 일본 국내의 모(母)기계를 통해 TV방송을 수신·녹화한 후, 해외 이용자들의 자(子)기계에 전송함으로써 일본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함.

o 이에 9개 민간방송사 및 NHK는 일본디지털가전社가 TV방송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이들 방송사는 일본디지털가전社에게 방송의 복제·녹화금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로쿠라쿠'의 폐기를 요구함.

日 최고재판소가 침해여부 최종 판단 예정

o 본 건은 1심에서 저작권 침해, 2심(항소심)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결되었으며, 향후 최고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침해여부를 판단하게 됨.

o 1심 법원은 복제행위 주체에 대한 판단을 위해 다음의 6가지 사항을 검토함.

① 서비스의 목적
② 모(母)기계의 설치장소 및 설치상황
③ 모(母)기계의 관리방법
④ TV방송의 녹화 가능여부
⑤ '로쿠라쿠' 이용시 송수신 범위
⑥ '로쿠라쿠'에 의한 이익의 귀속

o 1심 법원은 본 소송에서 피고가 모(母)기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TV방송의 복제 행위를 주도하는 동시에 서비스 운용이익을 얻고 있기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함.

o 한편, 항소심 법원은 일본디지털가전社의 서비스가 이용자의 사적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것이기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들의 이익 또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日 최고재판소, 공개변론을 통해 쌍방의견 접수

o 2010년 12월 16일 최고재판소는 공개변론을 통해 방송사 측과 일본디지털가전社 측의 의견을 접수함.

※ '변론(辯論)'이란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쌍방이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의미함.

- 본 변론에서 방송사 측은 저작물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대규모 전송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일본 콘텐츠산업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함.
- 일본디지털가전社 측은 자사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기기를 대여·판매한 것일 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론함.

o 통상적으로 최고재판소에서의 변론은 2심의 결론을 변경할 때 열리는 점에 비추어 향후 저작권 침해로 판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참조

www.47news.jp/CN/201012/CN2010121601000303.html, 2010.12.16
ootsuka-houmu.com/service/rokuraku.html, 2009.1.29
ascii.jp/elem/000/000/212/212233, 2009.2.16

일본서적출판협회, 전자출판시 저작권 협의를 위한 표준계약서 발표

일본서적출판협회(日本書籍出版協會)는 2010년 11월 1일 저작권자와 출판사 간 원활한 전자서적 출판을 위한 3가지 표준계약서 양식을 홈페이지에 공개함. 동 계약서 조항에는 출판사 측에 독점적 전자출판권을 허용하는 내용과 전자서적의 소유권 및 발행·이용 조건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

일본서적출판협회, 전자서적 출판 위한 저작권자와 출판사 간 표준계약서 양식 마련

o 일본 459개 출판사를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는 일본서적출판협회(日本書籍出版協会)는 2010년을 '전자서적의 원년(電子書籍元年)'으로 정하고 전자서적 시장의 확대를 도모함.

o 전자서적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통한 서적의 전자화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저작권자와의 협의를 위한 표준계약서 양식이 존재하지 않았음.

o 이에, 일본서적출판협회는 전자출판을 위한 표준계약서 양식 3종을 2010년 11월 1일 홈페이지에 공개함.

- 이번 공개된 표준계약서의 가장 큰 특징은 출판사가 저작권자로부터 서적의 전자출판에 대한 독점권을 이양 받도록 했다는 점에 있음.
- 출판사들은 사업내용에 맞도록 적절한 조항들을 취사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됨.

o 한편, 2010년 9월에는 전자잡지의 저작권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일정기간 저작권을 출판사에 양도하도록 하는 '전자잡지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양도 가이드라인[12)]'이 잡지업계에 의해 제시된 바 있음.

12) '전자잡지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양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은 「Global Copyright Protection Vol.4, Autumn(2010), pp.38-39」를 참조할 것.

출판사에게 독점적 전자출판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3가지 출판계약서 양식 공개

□ 양식 1 : 출판등계약서(出版等契約書)

o 기존 '출판계약서(2005년)'에 전자출판 관련 조항을 부가함.

- 출판사가 오프라인 상의 서적 출판권은 물론, 온라인 전자출판을 위한 독점적 저작물 이용권한(저작물의 전송 등)을 갖는다는 조항을 담고 있음.

□ 양식 2 : 전자출판계약서(電子出版契約書)

o 이미 출판된 서적을 전자화할 경우에 대한 계약서 양식임.

- 출판사가 온라인 전자출판을 위한 독점적 저작물 이용권한(저작물의 전송 등)을 갖는다는 조항을 담고 있음.

□ 양식 3 : 저작물이용허락계약서(著作物利用許諾契約書)

o 기존 「저작물이용허락계약서(2005년)」에 전자출판 관련 조항을 추가함.

- 출판사가 오프라인 상의 출판을 위한 저작물 이용권한은 물론, 온라인 전자출판을 위한 독점적 저작물 이용권한(저작물의 전송 등)을 갖는다는 조항을 담고 있음.

※ 출판권 설정을 할 경우에는 '출판등계약서(양식 1)'를, 출판권 설정까지는 하지 않고 출판사에게 단순히 저작물 이용허락만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이용허락계약서(양식 3)'를 이용하게 됨.

※ 표준계약서 양식(전문)

1. 출판계약서·출판등계약서
   - 출판계약서(2005년) : www.jbpa.or.jp/pdf/publication/publication01.pdf
   - 출판등계약서(2010년) : www.jbpa.or.jp/pdf/publication/denshikeiyaku1.pdf

2. 전자출판계약서
   - 전자출판계약서(2010년) : www.jbpa.or.jp/pdf/publication/denshikeiyaku2.pdf

3. 저작물이용허락계약서
   - 저작물이용허락계약서(2005년) : www.jbpa.or.jp/pdf/publication/publication02.pdf
   - 저작물이용허락계약서(2010년) : www.jbpa.or.jp/pdf/publication/denshikeiyaku3.pdf

전자서적의 소유권 및 발행·이용 조건에 대한 세부내용 설정

□ 전자서적에 대한 소유권(양식 1의 제5조, 양식 2의 제3조, 양식 3의 제5조)

o 출판사가 만든 전자서적에 대한 권리는 출판사가 갖게 됨.

- 저작권자는 계약의 유효기간뿐만 아니라 계약종료 후에도, 출판사의 승낙 없이 출판서적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허락하지 못함.

□ 전자서적의 발행조건(양식 1의 제11조, 양식 2의 제8조, 양식 3의 제11조)

o 출판사가 해당 저작물이 출판 또는 전자출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o 출판사는 서적의 가격, 제본방식, 제작 부수, 증쇄 시기, 홍보방법 및 판매 방식을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게 되며, 전자서적의 가격, 홍보방법, 전송방식 등의 이용조건을 결정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됨.

o 출판사는 관행에 따라 해당 저작물을 계속해서 출판할 의무를 가짐(온디맨드(on-demand) 출판 포함).

□ 전자서적의 이용조건(양식 1의 제2조, 양식 2의 제1조, 양식 3의 제2조)

o 출판사가 갖는 독점적 저작물 이용권한에는 ① DVD-ROM, 메모리카드 등의 전자매체에 복제하여 판매하는 것, ② 인터넷 등을 통해 공중송신하는 것, ③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④ 장애인의 이용을 위해 음성화하는 것이 포함됨.

o 또한, 동 표준계약서는 출판사가 제3자에게 해당 서적의 전자출판을 재허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日本書籍出版協会, 2010.1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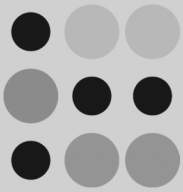

GLOBAL COPYRIGHT PROTECTIO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아시아 지역

중국

中, 불법저작물의 전국적 단속 강화를 위한 행동강령 발표 | 50 |

中 국무원, 정부기관의 불법 SW 이용방지를 위한 기관별 지침 제시 | 54 |

中, 온라인 불법저작물 연례 단속활동 '검망행동(劍网行動)' 실시 | 56 |

中 국가판권국, 저작권의 질권 등기에 대한 법령 공표 | 5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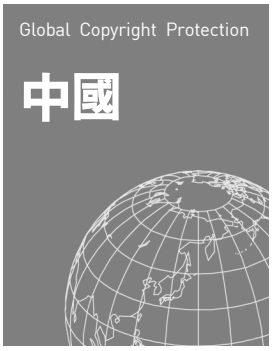

中, 불법저작물의 전국적 단속 강화를 위한 행동강령 발표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상무회의를 주최하고, 2010년 10월부터 향후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힘. 이에, 국무원 산하의 판공청(辦公廳)은 2010년 10월 27일, '지적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제조·판매 척결을 위한 전담행동방안(打擊侵犯知識産權和制售假冒僞劣商品專項行動方案)'을 제정하여 각 지방정부와 하급부서에 시달함

中 국무원,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전국적 단속계획 발표

o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2010년 10월 19일 상무회의를 주최하고, 2010년 10월부터 6개월간 전국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물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함.

o 중국은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해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이는 기업 경쟁력 약화 및 시장질서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음.

- 2009년 중국 문화부(文化部)에서 압수한 불법 음반은 3,613만 개, 불법 출판물은 1,077만 개에 달함.
- 2009년 한 해, 공안(公安)에서 처리한 지적재산권 관련 형사사건은 총 1,624건으로 2,649명이 구속되었으며, 동 사건의 경제적 가치는 10억 3,800만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건의 경제적 가치'는 불법복제행위자가 불법행위를 달성했을 경우 얻게 될 총소득을 의미함. 다만, 복제품에 표시가격이 없거나 평균 판매가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정품의 평균가격에 따라 계산하게 됨.

o 이에 2010년 10월 27일, 국무원(國務院) 산하의 판공청(辦公廳)은 '지적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제조·판매 척결을 위한 전담행동방안(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专项行动方案, 이하 '전담행동방안')'을 제정하여 각 지방정부와 하급부서에 시달함.

※ '지적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제조·판매 척결을 위한 전담행동방안'의 실행계획

① 동원·배치(2010년 10월)
: 각 지방정부 및 하급부서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10년 11월 10일까지 '전국 집중단속 지도소조(全國專項行動領導小組)'에 보고

② 실시(2010년 11월 ~ 2011년 2월)
: '전담행동방안'과 구체적 시행방안에 따라 집중단속을 수행

③ 검수(2011년 3월)
: 각 지방정부와 하급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마감하고, '전국 집중단속 지도소조'가 성과를 검토하여 국무원에 일괄 보고

o 중국정부는 이번 '전담행동방안'의 일환으로, 지적재산권 침해를 집중단속하고 침해관련 기업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함.

- 또한, 법집행 및 홍보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기업의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소비자의 복제품 감별능력을 높이는 한편, 법집행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적재산권의 행정적·사법적 보호를 도모하겠다고 밝힘.
- 구체적인 단속대상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음악물, 영상물, 출판물, SW, 휴대전화기, 의약품, 식물 등임.

o 한편, '전담행동방안'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국무원 산하에 '전국 집중단속 지도소조(全國專項行動領導小組)'를 설립함으로써, 집중단속을 총괄하고 일부 중대한 사건들을 지휘하도록 함.

o 이후 2010년 11월 5일에 개최된 '전국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집행사업' 화상회의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담화를 발표, 이번 집중단속에 대한 동원과 배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을 지시함.

o 2010년 11월 9일, 신문출판총서(新聞出版總署)는 베이징 8개 중점지역에 대한 사업회의를 소집, 신문출판총서, 국가판권국(國家版權局) 및 전국 '소황타비(掃黃打非) 본부'의 단속방안을 제시함.

※ '소황타비'란 음란물 및 불법저작물 등을 소탕하는 것을 의미함.

민관협력을 통한 전국적 불법저작물 단속 및 홍보·예방 활동 추진

□ 불법저작물 유통 집중단속 실시

o 이번 '전담행동방안'의 실시를 위해 각 지역에 위치한 공상소(工商所), 문화센터(文化站) 및 방송국은 공안에 협조하여 불법저작물 유통을 단속하며, 불법침해 행위에 대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거나 범죄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사건을 즉시 공안으로 이관하게 됨.

o 공안은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복제품 제작·판매 및 뇌물수수 행위를 수사하고 그 결과를 상부에 보고해야 함.

□ 지적재산권 침해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추진

o 지역 문화센터, 공상소, 공안, 저작권 관련 민간단체, 방송국 등의 기관이 협력하여 각종 출판물, CD, DVD 제조업체 및 상품포장 관련 기업을 감독하고 불법 판매행위를 감시함. 사안이 심각할 경우 인쇄영업허가증을 취소하도록 조치함.

o 공상소와 민간단체는 제품의 품질조사를 담당하고, 제조기업의 자격유무 심사와 무허가 영업활동을 단속함. 정품을 사칭하거나 원산지, 명칭, 인증서, 공장 주소 등을 속이는 경우 법에 의거해 처리하게 됨.

□ 지적재산권 보호 홍보활동 강화

o 각 정부부처는 국가의 지적재산권 보호활동 및 '전담행동방안'의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권리침해 사건·사례를 공개하여, 법률을 위반한 범죄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게 됨.

o 또한, 다양한 유형의 교육을 통해 지적재산권 관련 지식을 전파하고 사회전반의 지적재산권 보호 의식수준을 높임으로써,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불법복제물 제작·판매 행위를 스스로 지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함.

□ 침해사건에 대한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o ‘전담행동방안’ 실행 중 적발된 주요 침해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정부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상급 부처의 지시에 따름.

o ‘12330’ 지적재산권 제보 전화, ‘12390’ 권리침해 및 불법복제 제보 전화, ‘12315’ 소비자 신고 전화, ‘12365’ 제품품질 신고 전화, ‘12312’ 비즈니스 신고 전화 등을 설치하여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함.

□ 추진 성과

o 2010년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의 공안기관에서 처리한 형사사건은 모두 708건으로, 1,586명의 피의자를 구속하고 342곳의 은신처를 적발함. ‘사건의 경제적 가치’는 약 8억 3,500만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o 2010년 10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공상행정관리국(工商行政管理局)에서 적발한 위조사건은 총 3,010건으로, 부과된 벌금은 1,888만 위안임. ‘사건의 경제적 가치’는 약 4,420만 위안이며, 이 중 12건이 사법기관으로 이송됨.

o 2010년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검찰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853명이며, 공소건수는 600건으로 나타남.

- 이 중 저작권 침해로 인해 체포된 피의자는 22명, 공소건수는 12건임.

(中国国家知识产权局, 2010.12.01 & 中國版權保護中心, 2010.1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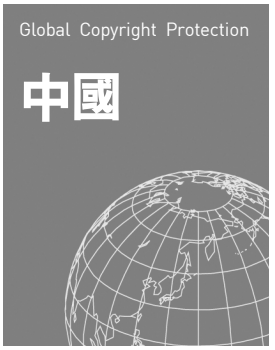

中 국무원, 정부기관의 불법 SW 이용방지를 위한 기관별 지침 제시

중국 국무원(國務院)은 2010년 10월 18일, '정부기관의 정품 SW 이용에 관한 통지문(政府机關使用正版軟件工作通知文)'을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등의 정부기관에 발송하고, 정부기관의 불법 SW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별 지침을 제시함

中 국무원, 정부기관의 합법 SW 이용필요성 통지

o 최근 들어, 중국은 정부기관의 이미지 개선과 사회 전반의 지적재산권 보호의식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원자바오(温家寶) 총리를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공식 회의석상에서 합법 SW 사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o 중국 정부기관의 SW 구매액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만 약 3억 5천만 위안의 합법 SW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國家知識産权局)과 리서치社인 인터넷실험실(互联网实验室)이 소프트사이언스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불법 SW 시장의 규모가 약 21조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프트사이언스(soft science)'는 인간과 사회현상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상을 연구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복잡한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과학기술임.

o 이에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2010년 10월 18일 '정부기관의 정품 SW 이용에 관한 통지문(政府机关使用正版软件工作通知文)'을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등의 지방정부 기관에 발송하고, 정부차원의 합법 SW 이용촉진을 위한 기관별 지침을 제시함.

中 국무원, 합법 SW 이용촉진 위한 정부기관별 업무 할당

□ 기관별 업무분장 내용

o 통지문의 지침에 따르면, 각 정부기관 부서별 책임자의 1차적 책임 하에 합법 SW 이용을 관리·감독하며, 신문출판총서(新闻出版总署),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재정부(财政部), 상무부(商務部), 공상부(工商部)는 합법 SW의 이용촉진을 위한 역할을 분담하게 됨.

〈표 1〉 중국 정부기관별 SW 관련 업무분장 현황

기관명	업무내용	협력기관
신문출판총서	정부기관 대상 불법 SW 단속	
	국무원에 단속현황 보고(연례)	
	합법 SW 이용 관리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PC에 기본설치 되는 SW 관리	
	SW 품질 및 A/S 관리	
재정부	정부의 SW 구매자금 관리	
	정부기관 대상 SW 자산관리 교육	
상무부	SW 시장 규제 및 질서 유지	신문출판총서, 공상부

□ 2011년 집중단속 계획

o 중국정부는 2010년 12월 말까지 기관별 SW 구매 및 교환을 완료한 후, 2011년 1월과 5월, 정부기관의 불법 SW 이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임.

(中国国家版权局, 2010.1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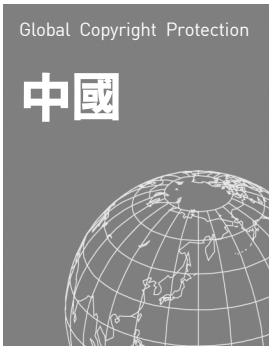

中, 온라인 불법저작물 연례 단속활동 '검망행동(劍网行動)' 실시

중국정부는 온라인 상 불법저작물에 대한 연례 단속활동인 '검망행동(劍网行動)'을 2010년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음. 중국은 이번 활동에서 상습적 침해사이트를 폐쇄조치하고, 민간 저작권단체와 협조하여 저작권 침해 예방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신고제도를 통해 단속의 효율화를 모색함

中, 온라인 상의 불법저작물 연례단속활동 '검망행동' 실시

o 최근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성장모델의 전환 및 혁신형 국가건설 시책에 자국의 낮은 저작권 보호 수준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에, 중국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국가성장의 기본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음.

o 이에 온라인 상의 권리침해 행위 단속 및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질서를 확립하고 저작권 산업의 발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검망행동(剑网行动)'을 2010년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함.

o '검망행동'은 온라인 상의 음악물, 영상물, 출판물, 게임물 및 SW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저작물의 업로드 행위를 집중단속하는 활동으로,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왔음.

- 이번 활동에서는 상하이 엑스포 및 광저우 아시안게임 관련 저작물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특별단속함.

o 중국정부는 2010년 '검망행동'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시스템 정착', '신속 대응', '대중 참여', '집중단속', '원천단속'이라는 5가지 전략을 제시하였음.

※ 2010년 '검망행동'의 5대 추진전략

① 시스템 정착
-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직화, 전문화, 기술화라는 특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 인터넷 관리시스템을 구축

② 신속 대응
-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정부기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법집행 과정의 신속성을 제고

③ 대중 참여
- 저작권 침해신고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대중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유도

④ 집중단속
- 상습적인 권리침해 사이트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수행하고, 그 침해정도가 심각할 경우 형사적 책임 부과

⑤ 원천단속
- 주요 사이트에 대해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인터넷 권리침해 및 불법복제의 발생을 차단

o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과 공안부(公安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단속관련 기관의 역할 분배와 업무지도를 위해 '전국 인터넷 권리침해 및 불법복제 전담 단속업무 지도부서(全国打击网络侵权盗版专项治理工作领导小组)'를 공동설립함.

상습적 침해사이트를 단속하고 침해신고에 대해 보상금 지급

o 이번 '검망행동'에서 국가판권국과 공안부는 '저작권 침해 범법행위 단속업무 중 협력 강화에 관한 임시규정(关于在打击侵犯著作权违法犯罪工作中加强衔接配合的暂行规定)'에 따라,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음.

o 또한 판권관리사(版权管理司)와 과학디지털출판사(科技与数字出版司)는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실시함.

- 침해사이트 적발시 자체적 침해예방조치를 명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침해가 재발할 경우 사이트를 폐쇄조치 함.
- 중국 국가판권국은 폐쇄 사이트 리스트를 작성·공개하고, 침해수준이 심각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

※ 판권관리사는 국가판권국의 산하기관으로 저작권 관련 행정법의 집행, 법규정 초안작성 및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과학디지털출판사는 온라인 상의 효율적 저작권관리를 위한 표준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o 한편, 중국정부는 민간 저작권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온라인 저작권 침해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를 적극 지도하는 동시에 무작위 단속·감독 업무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기초업무를 강화하고, 권리정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이용자가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o 기타 단속 관련기관은 불법저작물 신고사이트 및 전화를 적극 활용하여 저작권 침해 증거를 수집하고, 침해행위와 관련된 불법파일 업로더 및 서버관리자 등을 조사하였음.

※ 저작권 침해신고 보상금 지급규정

보상금은 1,000위안에서 10,000위안까지 차등 지급하고, 동일 사건일 경우 먼저 신고하는 자, 또는 사건수사에 결정적 기여를 한 자가 받을 수 있으며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음.

① 음악, 영상, 출판, 게임, 애니메이션, SW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인터넷 사이트
② 상하이 엑스포 및 광저우 아시안게임 관련 저작권을 침해한 인터넷 사이트
③ 불법복제된 도서, 음반, 영상물, SW 등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④ 권리침해 또는 불법복제와 관련된 휴대전화 미디어
⑤ 서버가 해외에 개설된 중국 내 불법사이트
⑥ 인터넷 사이트 회원의 권리침해 또는 불법복제 관련행위
⑦ 권리침해 또는 불법복제와 관련된 불법사이트

(人民网 , 2010.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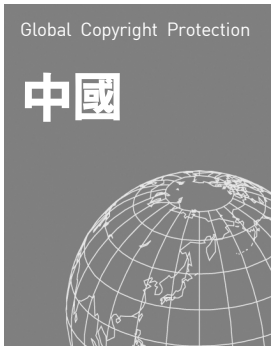

中 국가판권국, 저작권의 질권 등기에 대한 법령 공표

중국의 저작권 질권 등기 관련 법령이 2010년 10월 19일에 열린 국가판권국(國家版權局) 제1차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본 법령은 질권 등기기관 및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中 국가판권국, 2011년 1월부터 「저작권 질권 등기방법」 법령 시행

o 1996년 9월 중국 국가판권국에서 제정·공포한 「저작권 저당계약 등기방법(著作權質押合同登記辦法)」은 저작권 저당계약 등기행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 그러나 2007년 「물권법(物權法)」이 제정되면서 등기는 저작권 저당계약의 발효요건이 아닌 저작권 질권의 성립요건이 됨.
- 2008년 6월 국무원은 「국가지적재산권전략개요(國家知識産權戰略綱要)」를 통해 저작권 저당제도 개선을 요구함.

o 이후 2010년 2월 「저작권법(著作權法)」이 개정되면서 국무원의 저작권 행정기관인 국가판권국(國家版權局)이 저작권 질권 등기기관으로 확정되었으며 기존의 「저작권 저당계약 등기방법」을 대체하여야 할 새로운 법령이 필요하게 됨.

o 이에, 국가판권국(國家版權局)은 「물권법」과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저작권 질권 등기방법(著作權質權登記辦法)」을 발표하였으며, 2010년 10월 19일에 개최된 국가판권국 제1차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

※ 저당계약을 등기하던 방식에서 저작권 질권을 등기하는 것으로 수정함에 따라 법령의 명칭도 변경됨.

中 국가판권국, 저작권 질권의 등기기관 및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 제시

□ **중국판권보호중심(中國版權保護中心) 저작권 질권 등기업무 담당**

o 「저작권 질권 등기방법」 제2조는 국가판권국에서 저작권 질권의 등기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0년 12월 13일, 국가판권국은 중국판권보호중심에 저작권 질권의 등기업무를 위탁한다고 공포함.

o 제5조, 제20조, 제21조는 또한 저작권 질권의 등기기관이 '저작권 질권 등기부'를 두고 신청자에게 '저작권 질권 등기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함.

- 이는 '저작권 질권 등기부'에 질권 등기사항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기재함으로써, 공신력을 보강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저작권 가치평가 보고서 제출조건 제시**

o 중국의 저작권 가치평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만큼, 저작권 질권의 등기에 있어서 '저작권 가치평가 보고서(著作權價値評估報告)'에 관한 별도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저작권 질권 등기를 신청할 때, 질권을 설정하는 저작권의 가치평가를 이미 진행하였거나, 질권자가 가치평가를 요구하거나, 관련 법규가 가치평가를 하도록 규정할 경우에만 저작권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

(中國國家版權局, 2010.1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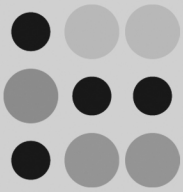

GLOBAL COPYRIGHT PROTECTIO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유럽

英 고등법원, 뉴스 헤드라인도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판결 | 64 |
英 인포마텔레콤앤미디어, 전 세계 실연권료 분배현황 발표 | 68 |
英, 비영리단체의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해 저작권료 징수제 도입 | 70 |
佛 저작권 3단체, 유튜브社와 저작물 이용보상금 협약 체결 | 72 |
유럽의회,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 결의안 통과 | 7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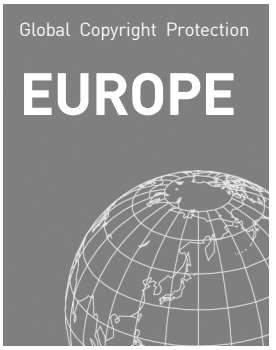

英 고등법원, 뉴스 헤드라인도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판결

영국 고등법원은 홍보컨설턴트협회(PRCA)가 멜트워터社의 뉴스클리핑 서비스로부터 뉴스정보(기사 본문으로 링크되는 헤드라인 및 요약문 등)를 가져와 자사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과 관련, 뉴스 헤드라인도 저작권 보호대상에 포함되므로 홍보컨설턴트협회(PRCA)는 뉴스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2010년 11월 26일 판결함

英, 뉴스클리핑 서비스의 재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발생

□ 사건의 개요

o 영국의 멜트워터社는 뉴스클리핑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뉴스콘텐츠 제공자(신문사 등)의 정식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뉴스의 헤드라인(headlines), 기사(article)의 첫 구절, 또는 기사의 요약문(extracts)을 가져와 원본기사로 직접 연결하는 링크서비스를 제공함.

※ 멜트워터社는 자사의 고객이 원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뉴스를 수집하여 웹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전달해주는 뉴스클리핑(news clipping)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음.

o 이에 NLA社는 멜트워터社의 뉴스클리핑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사의 회원사에게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홍보컨설턴트협회(Public Relations Consultants Association, 이하 PRCA)와 멜트워터社를 상대로 뉴스의 헤드라인, 기사 및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 NLA社

영국 신문사 회원들의 저작권 관리를 대행해 주는 이용허락기관(licensing body)[13]으로서, 뉴스클리핑 서비스업체들에게 라이선스를 주고 있음.

※ 홍보컨설턴트협회(PRCA)

영국의 홍보컨설팅업체들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임. 이 사건에서 PRCA는 멜트워터社로부터 뉴스정보를 가져와 자사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였음.

13) 영국「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 Act 1988)」제116조는 "이용허락 기관(licensing bodies)이란 저작권자나 장래의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저작권 허락을 교섭하거나 부여하는 것을 그 주요한 목적 또는 그 주요한 목적의 하나로 하는 단체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하며, 다수 저작자의 저작물에 적용되는 허락의 부여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함.

□ NLA社가 제시한 저작권 침해의 근거

o NLA社는 PRCA의 저작권 침해 근거로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함.

① 멜트워터社의 웹사이트 및 이메일을 통해 기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PRCA는 자사의 고객에게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뉴스저작물의 복사본을 제작하게 되며, 이는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 Act, 이하 CDPA)」 제23조가 규정하는 2차적 침해(Secondary infringement)에 해당됨.

※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제23조

제23조 2차적인 침해 : 불법복제물의 소유 또는 거래

(1) 불법복제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침해에 해당한다.
(a) 업무과정에서 그 물품을 점유하는 행위
(b)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또는 판매나 임대를 위하여 제공 또는 진열하는 행위
(c) 업무과정에서 그 물품을 공중에 전시 또는 배포하는 행위
(d) 업무과정이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배포하는 행위

② PRCA의 행위는 CDPA 제17조에 의거, 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Infringement of copyright by copying)에 해당함.

※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제17조

제17조 (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

(1) 저작물의 복제는 모든 저작물에서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이며, 이 편에서 복제 또는 복제본을 가리키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2) 어문, 연극, 음악 또는 예술 저작물과 관련한 복제는 어떠한 유형적인 형태로 저작물을 재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어느 장치에 저작물을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미술저작물에 있어서, 복제는 2차원 저작물을 3차원의 복제물로 제작하고 3차원 저작물을 2차원의 복제물로 제작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영화, 텔레비전 방송 또는 유선프로그램에 있어서, 복제는 영화, 방송 또는 유선 프로그램의 부분을 구성하는 영상의 전부나 본질적인 부분을 사진으로 제작하는 것을 포함한다.
(5) 발행물의 판면배열과 관련하여, 복제는 그 배열의 원형대로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예시된 저작물의 복제는 일시적이거나 저작물의 다른 이용에 부수적인 복제물의 제작이 포함된다.

③ PRCA가 멜트워터社로부터 제공받은 링크를 고객에게 전달한 것은 CDPA 제18조에 의거, 복제물의 배포에 의한 침해에 해당함.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제18조

제18조 (복제물의 공중 배포에 의한 침해)

(1)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 배포하는 것은 모든 보호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이다.

(2) 이 편에서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 배포하는 것이라 함은 종전에 유통되지 않은 복제물을 영국이나 기타 지역에서 유통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a) 그러한 복제물을 추후에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b) 그러한 복제물을 추후에 영국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녹음물, 영화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복제물의 공중에의 대여는 공중에의 배포가 제한되는 행위에 포함된다.

□ 영국 고등법원의 저작권 침해 판결

o 영국 고등법원은 2010년 11월 26일, PRCA 및 그 회원사들이 멜트워터社의 뉴스를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원고로부터 '웹 최종이용자 라이선스(Web End-User Licence)'라는 이용허락(licence)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PRCA 및 그 회원사들이 최종이용자(End User)에 해당할 경우 '웹 최종이용자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o 판결문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PRCA 및 그 회원사들이 자사 고객들을 위해 멜트워터社로부터 정보를 획득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최종이용자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힘.

o 그러나, NLA社의 이용허락(licence) 없이 PRCA가 멜트워터社로부터 뉴스를 받고 자사의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 비록 뉴스의 내용이 NLA社의 회원사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더라도, 뉴스의 헤드라인에 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기에 PRCA는 NLA社와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한편, 법원은 침해가 기사내용과 관련 있을 뿐 데이터베이스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하면서, NLA社의 데이터베이스 침해 청구를 기각함.

英 고등법원, 뉴스의 헤드라인 및 요약문도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판결

□ 헤드라인(headlines)의 독립성 및 저작물성 인정

o 이 사건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뉴스 기사의 헤드라인이 독립적인 저작물인지 판단하기 위해,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가 헤드라인은 문학저작물(literary work)이 될 수 있다고 내린 판결을 참고함.

o 영국 고등법원은 일부 헤드라인들은 단지 기사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적인 문학저작물이 될 수 있기에, 헤드라인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함.

□ 요약문(extracts)의 독창성 및 저작물성 인정

o 영국 고등법원은 요약문이 기사의 주요부분(substantial part)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요약문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독창성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함.

o 이에 요약문은 저자의 지적 표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며, 기사의 주제 및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를 기사로 끌어들이는 특별한 기능을 한다고 보고, 요약문도 기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밝힘.

※ 참조

www.bailii.org/ew/cases/EWHC/Ch/2010/3099.html, 2010.11.26
www.techeye.net/internet/nla-wins-court-judgement-against-meltwater, 2010.11.26
www.informationoverlord.co.uk/?cat=17, 2010.1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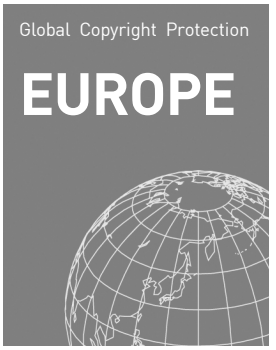

英 인포마텔레콤앤미디어, 전 세계 실연권료 분배현황 발표

영국의 리서치회사인 인포마텔레콤앤미디어(Informa Telecoms & Media)社는 2010년 10월 25일 「음악과 저작권(Music & Copyright)」이라는 격주간지를 통해 세계 실연권료 분배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함.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실연권자들에게 분배된 실연권료는 2009년 14억 5,900만 5천 달러로 2008년 대비 약 0.6% 증가함

英 리서치社, 전 세계 실연권료 분배현황 조사결과 발표

o 영국의 리서치회사인 인포마텔레콤앤미디어(Informa Telecoms & Media)社가 2010년 10월 25일 발간한 「음악과 저작권(Music & Copyright)」誌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레코드 음반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 세계 실연권자들에게 분배(distribution)된 실연권료(이하 '분배액')는 2008년 14억 5,000만 달러에서 2009년 14억 6,000만 달러로 증가함.

- 음반제작자에 대한 2009년 분배액은 7억 9,400만 6천 달러로, 2008년 777만 4천 달러 대비 2.2% 증가함.
- 실연자에 대한 2009년 분배액은 6억 6,600만 9천 달러로, 2008년 672만 7천 달러 대비 1.2% 감소함.

o 한편, 실연권 분야의 최대시장인 유럽은 2009년 전 세계 분배액의 약 64.8%(2008년 7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실연자단체인 영국의 음반실연협회(Phonographic Performance Limited; PPL)는 2007년 1억 1,500만 파운드, 2008년 1억 2,700만 6천 파운드의 실연권료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전 세계 실연권료 분배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증감율(%)
변동환율 (Variable exchange rates)	제작자	7억 7,700만 4천 달러	7억 9,400만 6천 달러	2.2%
	실연자	6억 7,200만 7천 달러	6억 6,400만 9천 달러	-1.2%
	합계	14억 5,000만 1천 달러	14억 5,900만 5천 달러	0.6%
고정환율 (Constant exchange rates)	제작자	7억 3,400만 2천 달러	7억 9,400만 6천 달러	8.2%
	실연자	6억 3,800만 7천 달러	6억 6,400만 9천 달러	4.1%
	합계	13억 7,200만 9천 달러	14억 5,900만 5천 달러	6.3%

※ 출처 : Informa Telecoms & Media, 「Music & Copyright」, 2010

실연권료의 대부분은 방송 분야에서 징수

o 국가별 차이는 존재하나 실연권료의 대부분은 방송분야에서 징수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공실연(public performance) 분야가 차지하고 있음.

o 현재 음악산업의 발전현황을 판단하는 척도로써 음반 판매량만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실연권료 분배액의 증가 추세는 음반판매 이외 요인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실연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인 사운드익스체인지(SoundExchange)는 미국의 제작자 및 실연자들에게 2008년 약 1억 달러, 2009년 약 1억 5,550만 달러가 분배되었다고 밝힘.

o 실연권 시장의 성장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은 동유럽, 북미, 아시아 등으로, 실연권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 이라크, 이란, 북한 등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참조

musicandcopyright.wordpress.com/2010/10/, 2010.10.25
musicandcopyright.wordpress.com/2009/10/14/performance-rights-distributions-top-us1-5-billion-in-2008/, 2009.10.14
www.the-infoshop.com/newsletter/fi6683_music_copy.html, 2010.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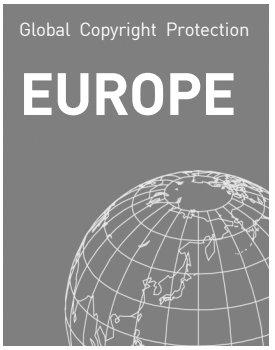

英, 비영리단체의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해 저작권료 징수제 도입

영국정부는 2010년 11월 비영리단체와 저작권자 간 합리적 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음악 라이선싱 제도(music licensing system)를 발표함. 본 제도 도입 이전에는 비영리단체의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해 별도의 저작권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향후 12개월간의 유예기간 이후 정해진 요율에 따라 저작권료를 징수하게 됨

英, 비영리단체에 대한 새로운 음악 라이선싱 제도 도입

o 영국정부는 비영리단체와 저작권자 간 합리적 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음악 라이선싱 제도(music licensing system)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2008년 7월부터 자선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저작권단체 간 협상을 통해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2010년 11월 새로운 라이선싱 제도를 발표함.

o 이에 영국의 작곡자, 작사자 및 음악제작자를 대표하여 저작권료를 징수·배분하는 영국 음반실연협회(Phonographic Performance Limited; PPL) 및 음악실연권협회(Performing Right Society for Music; PRS)는 이번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 음반실연협회(PPL)와 음악실연권협회(PRS)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단일한 저작권료 징수체계를 갖게 되었으며, 상호협력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음악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동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음반실연협회(PPL)**

영국 내 42,000명의 음악 실연자와 5,000여개의 레코드 회사를 대표하며, 온·오프라인 상의 음악물 이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함. 자체적인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으며, 비용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회원들에게 배분하고 있음.

※ **음악실연권협회(PRS)**

1914년에 작사가, 작곡가 및 음반제작사 등이 자신들의 권리 처리를 위해 설립한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서, 60,000여 명의 저작권자들을 대표하는 저작권 및 로열티 징수기관임.

英 음악저작권단체, 비영리단체에도 저작권료 징수

o 본 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비영리단체의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해 별도의 저작권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향후 12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는 정해진 요율에 의한 저작권료를 징수하게 됨.

- 비영리단체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연간 최하 40~54파운드의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며, 이는 지역 축제와 카니발과 같은 야외행사에 대해서도 적용됨.

o 한편, 비영리단체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레코드, CD, 라디오, TV 등을 통해 음악이 연주되는 경우에도 음반실연협회(Phonographic Performance Limited) 및 음악실연권협회(Performing Right Society for Music)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함.

o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 저작권자들은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며, 비영리단체는 과도한 비용의 지불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으로 평가됨.

(UK IPO, 2010.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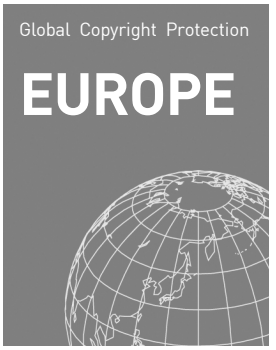

佛 저작권 3단체, 유튜브社와 저작물 이용보상금 협약 체결

프랑스의 3개 저작권단체 ADAGP, SACD, SCAM는 유튜브(YouTube)社와 저작물 이용 보상금에 대한 협약을 2010년 11월 25일 체결함. 유튜브社는 해당 저작권단체들의 저작물로 얻은 수익의 일정부분을 돌려주기로 하였으며, 동 보상금 적용 범위는 유튜브社의 2007년도 프랑스 시장 진출시점까지 소급 적용됨

佛 3개 저작권단체, 유튜브社와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협약 체결

o 프랑스의 3개 저작권단체 ADAGP, SACD, SCAM는 유튜브(YouTube)社와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협약을 2010년 11월 25일 체결함.

- 유튜브社는 해당 저작권단체의 저작물로부터 얻은 수익의 일정부분을 돌려주기로 하였으며, 보상금은 유튜브社의 2007년 프랑스 시장 진입시점까지 소급 적용됨.

※ ADAGP(Sociétés d'Auteurs Dans les Arts Graphicques et Plastiques)

프랑스의 회화, 조각, 사진, 멀티미디어 등 시각예술 분야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저작권단체로서, 저작권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약 8만 명의 회원을 보유함.

※ SACD(Société des Auteurs et Compositeurs Dramatiques)

프랑스의 드라마, 문학 등 시청각 분야 작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저작권단체로서 1829년 3월 설립됨. 극장, 시청각, 사진 작품의 실연권을 관리·보호하고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약 4만 4천 명의 회원을 보유함.

※ SCAM(Société Civile des Auteurs Multimedia)

프랑스의 시청각 분야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저작권단체로서, 감독, 연출자, 작가, 비평가, 번역가, 저널리스트, 사진작자, 만화가 등을 대변하는 단체임.

o 이번 협약은 저작권자들에게 있어서 인터넷 상의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음.

- 인터넷 상의 동영상 사이트들은 전문분야의 콘텐츠 게시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저작권자와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임.

o 또한, 유튜브社과 저작권 3단체는 더 많은 콘텐츠를 온라인 상에 게시하도록 합의였으며, 이로 인해 유튜브의 프랑스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프랑스 저작권자들의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o 프랑스 저작권단체들은 유튜브社와의 이번 협약이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 참조

www.bloomberg.com/news/2010-11-25/google-s-youtube-signs-france-artists-accord-after-copyright-map-battles.html, 2010.11.25
www.cisac.org/CisacPortal/listeArticle.do?numArticle=1257&method=afficherArticleInPortlet, 2010.11.25
googlepolicyeurope.blogspot.com/2010/11/un-soutien-solide-la-culture-francaise.html, 2010.1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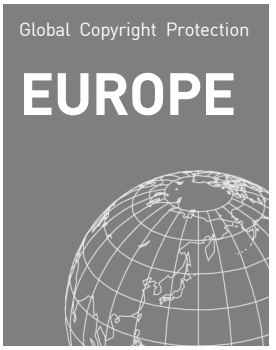

유럽의회,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 결의안 통과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의 유럽 승인을 위한 유럽의회(EP)의 결의안(resolution)이 2010년 10월 브뤼셀에서 통과됨. 유럽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ACTA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ACTA 승인에 대한 최종 투표는 2011년 초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

유럽의회,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에 대한 결의안 발표

o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의 유럽 승인을 위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 결의안(resolution)이 2010년 10월 브뤼셀에서 통과됨.

- 유럽의회는 ACTA에 관한 2가지 결의안인, 공동결의안(Joint Resolution)과 대안적 결의안(Alternative Resolution)의 채택여부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투표 결과 대안적 결의안으로 가결됨.
- 이번 결의안 통과는 공식적인 구속력(formal effect)을 갖지는 않으며, 유럽의회의 입장표명에 불과함.

o 이번 투표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최종 ACTA 동의결정을 위한 준비단계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ACTA의 동의여부에 대한 최종 투표는 2011년 초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

유럽의회, 대안적 결의안 통해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에 대한 지지입장 표명

□ **유럽집행위원회의 독자성을 강조한 공동 결의안(Joint Resolution)**

o '동의 절차를 위한 준비(Preparing for the Consent Procedure)'라는 제목의 공동 결의안은 사회당(Socialists), 자유당(Liberals), 해적당(Pirate Party), 녹색당(Greens Group) 등 좌파단체(Left groups)들에 의하여 제안되었으며, 찬성 306표, 반대 322표, 기권 26표로 채택되지 않음.

o 공동 결의안은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유럽의회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 위치에 있음을 강조함.

- 공동 결의안(joint resolution)을 지지하는 좌파단체들은 유럽집행위원회에 ACTA와 관련한 주요 이슈들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바 있음.

□ **지적재산권 보호법 상의 조화를 강조한 대안적 결의안(Alternative Resolution)**

o 대안적 결의안은 유럽국민당(Europe People's Party; EPP)과 영국보수당(UK Conservative Party)을 포함한 유럽보수개혁단체(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ECR)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찬성 331표, 반대 294표, 기권 11표를 얻어 37표라는 비교적 근소한 표차이로 통과됨.

o 대안적 결의안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ACTA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주요 골격으로 하고 있으며, ACTA 협정의 실행으로 인해 유럽연합(Eurepean Union; EU)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 및 전자상거래 정책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유럽집행위원회가 확인해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함.

- 또한, ACTA 가맹국들 간의 법제 및 시행절차 상의 차이점을 비교·검토하고, ACTA가 기존 국제조약의 원칙들과 조화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o 대안적 결의안은 ACTA가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기준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고 유럽연합의 지적재산권 산업과 권리자들을 보호하는 도구가 될 것이며, ACTA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에 비해 더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다고 평가함.

o 한편, ACTA에 삼진아웃제(three strikes)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고, ACTA의 주요목표인 P2P 파일공유에 관한 산업계 견해를 수용함.

- 유럽연합 및 여타 ACTA 가맹국도 삼진아웃제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o 유럽의회는 극장에서 캠코더로 영화를 도촬하는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기로 권고하는 ACTA 조항[14]과 관련, 'may'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캠코더 도촬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선택사항으로 명시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방을 표명함.

o 끝으로, ACTA 조약문에 일방적인 변경을 하거나, ACTA가 유럽연합의 저작권법, 특허법 및 상표법의 개정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백히 함.

※ 참고

www.thinq.co.uk/2010/11/25/ec-welcomes-acta, 2010.11.25
christianengstrom.wordpress.com/2010/11/24/acta-resolution-failed, 2010.11.24
www.iptegrity.com/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587&Itemid=9, 2010.11.24
www.zeropaid.com/news/91364/european-parliament-passes-resolution-welcoming-acta, 2010.11.24

14) ACTA 조항 2.14.3 - "Each party may provide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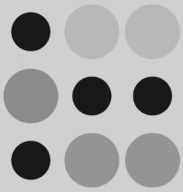

GLOBAL COPYRIGHT PROTECTIO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국제기구

WIPO, 저작권의 예외규정 및 인접권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마련 착수 | 80 |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촉구 | 8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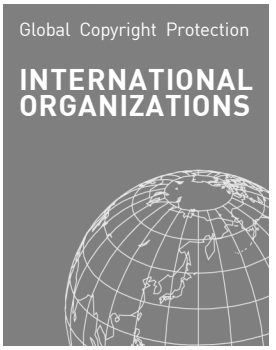

WIPO, 저작권의 예외규정 및 인접권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마련 착수

WIPO는 2010년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임위원회(SCCR)' 제21차 회의에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규정, 시청각 실연 및 방송기관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조약 규정 마련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함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임위원회' 제21차 회의 개최

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은 작가, 실연가, 콘텐츠 제작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여 각국의 문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함.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목적은 ① 창작자에게 대가를 되돌려줌으로써 창작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② 대중들이 콘텐츠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의 국제적 표준과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SCCR, 이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요 저작권 현안을 논의해 옴.

o WIPO는 2010년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열린 상임위원회의 제21차 회의에서 ① 저작권 제한 및 예외규정, ② 시청각 실연 보호, ③ 방송기관의 보호에 대해 논의하였음.

WIPO, 저작권의 예외규정 및 실연자와 방송사업자 보호방안 논의

1 제한 및 예외규정(Limitations and Exceptions)

o 동 상임위원회에서 2012년까지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규정을 마련하기로 합의함.

- 구체적으로, 도서관, 기록보관소(archives),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의 저작권 예외규정에 대한 공식 합의문 작성에 착수할 예정임.

o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한 및 예외규정과 관련, 브라질과 에콰도르, 멕시코 및 파라과이는 세계시각장애인연합(World Blind Union; WBU)이 제안한 '맹인, 시각장애인 및 독서불능자의 접근 향상을 위한 WIPO 조약(WIPO Treaty for Improved Access for Blind, Visually Impaired and Other Reading Disabled Persons)'안을 제안한 바 있음.

o 상임위원회는 2011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총회(WIPO General Assembly)에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저작권 제한 및 예외규정 작성을 권고하고, 2012년 총회에서는 세부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임.

2 시청각 실연 보호(Protection of Audiovisual Performances)

o 시청각 실연의 보호 관련, 2000년에 있었던 외교회담(Diplomatic Conference)에서 국제규정 마련을 위한 논의 결과, 19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며, 이후 실연자와 제작자 간 권리양도에 대한 추가합의가 이루어졌음.

o 상임위원회는 2011년 1월 31일까지 실연권 관련 조약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접수하고 공식 논의하겠다고 밝힘.

o 상임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시청각 저작물의 국제적 이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실연물의 무단이용 행위로부터 실연자를 보호하기를 기대함.

3 방송기관의 보호(Protection of Broadcasting Organizations)

o 상임위원회는 방송기관 보호를 위해 조약규정을 개정하기로 협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함.

-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의 회원국들은 2011년 3월 1일까지 방송기관 보호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조약의 개정안을 작성할 예정임.

o 상임위원회는 기술 전문가들을 포함시킨 비공식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방송기관 보호 관련 기술적 이슈들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2011년 6월 15부터 6월 22일까지 개최될 제22차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을 발표할 예정임.

o 또한, 방송신호의 무허가 이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신호 기반 접근법(signal-based approach)에 따른 목적, 범위 및 대상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힘.

(WIPO, 2010.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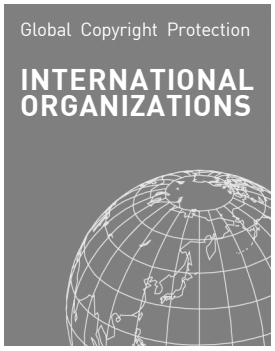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촉구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는 2007년 4월 협의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추가협상이 2010년 12월 3일 타결된 것에 지지 입장을 밝히고, 협정의 조속한 비준을 한국 측에 촉구해 달라고 미국정부에 요청함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에 대한 지지 입장 표명

□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o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는 2007년 4월 협의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추가협상이 2010년 12월 3일 타결된 것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함.

- BSA 로버트 헐리먼(Robert Holleyman) 대표이사는 한·미 FTA는 국제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규정한 주요 무역국 간의 합의로써 서비스 분야에서 폭넓은 시장 접근을 이끌어낼 것이기에, 협정의 조속한 비준을 한국 측에 촉구해 달라고 미국정부에 요청함.

※ 지적재산권 분야 한·미 FTA 주요내용

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을 보완하는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규정
② 온라인 상 지적재산권 침해유형 검토 및 침해관련 수단의 유통방지 추진
③ 온라인 상 한국과 미국의 기업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 규정

o BSA는 한국이 SW 침해 억제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IT분야 전체가 관여해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공적인 SW 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모범국이기에, 한·미 FTA를 통해 더욱 강화된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힘.

- 로버트 헐리먼 대표이사는 15년 전, 한국에서는 개인 컴퓨터에 설치된 SW 중 76%가 불법이었으나, 그간 한국정부의 강력한 법집행에 따라 불법복제율을 절반 가까운 41%로 줄였다고 강조함.

한·미 FTA,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및 기타 보호규정 강화

□ 저작권 분야 한·미 FTA 주요 합의안

①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의 예외규정

- 아날로그 형태의 통신, 공중파 라디오 및 TV의 경우 상대국의 음반을 2차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 상대방 국가의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기준을 적용하여 방송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내국민대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

※ '내국민대우'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타국민에 대해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함.

② 일시적 복제(temporary copy)

- 오늘날 영화, 음악, 게임 등의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에서 저작물을 소유하지 않고 일회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저작권자가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갖도록 규정함.

※ '일시적 복제'는 디지털화 된 저작물을 컴퓨터의 RAM 등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것을 의미함.

③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

- 저작물이나 기타 보호대상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금지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접근통제가 인정되었음. 이와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접근통제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기로 함.

④ 저작권의 보호기간

-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자 사후 70년,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의 공표 후 70년으로 함. 한편, 창작 후 25년 내에 저작물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 창작 후 70년으로 존속기간을 정함.

※ 현행 한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권자 사후 50년, 업무상 저작물은 공표 후 50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⑤ 권리관리정보(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보호규정

-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자, 저작물 이용조건과 관련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코드를 표시하는 정보의 배포를 금지함.

⑥ 대학가 불법저작물 단속

- 대학가에서 유통되는 저작물의 불법복제 및 배포를 억제하기 위한 단속 강화방침을 부속서(annex)에 설정함.

⑦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면책요건 및 내용을 규정하고, 침해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불법저작물에 대한 삭제절차를 협정 본문과 부속서 상에 규정함.

⑧ 법정손해배상제도(statutory damages system)

- 침해사실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액을 일정 범위 내에서 미리 확정하여 배상액 입증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BSA, 2010.12.3)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 – IN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상 UCC 삭제통지의 남용을 막기 위한 요건 | 88 |

프랑스 정부의 '당근과 채찍' 저작권 보호 정책에 대한 소고 | 94 |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저작권보호센터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상 UCC 삭제통지의 남용을 막기 위한 요건

김경숙 교수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1. 서 론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1]은 디지털저작물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미국저작권법(1976)의 개정법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기술적 보호조치(제1201조) 및 권리관리정보(제1202조),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의 면책규정(제512조)에 관한 것이다.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저작물의 복제를 통제하는 기술(복제통제)뿐만 아니라 저작물에의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접근통제)도 저작권법 상 보호를 받게 되었는데, 후자(접근통제)의 경우는 자칫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콘텐츠에 대하여도 저작권법 상의 보호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정이용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한편 권리관리정보란 저작물의 식별이나 이용에 필요한 정보로서 그 제거나 개변 등은 민형사상의 책임에 연결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DMCA는 강력한 디지털저작물의 보호법으로 알려져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나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규정이 디지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력히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 반하여, OSP의 면책규정(safe harbor)은 디지털저작물을 게재한 OSP의 (유저들의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관련한) 면책요건을 규정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디지털저작물 저작권자의 권리와 유저들의 공정한 이용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다. OSP 면책규정 하에서 OSP는 유저들의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제512조에 따른 조치, 즉, 저작권자 측의 '삭제통지(takedown notice)'와 이에 대한 유저들의 '대응통지(counter-notification)'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기만 하면 된다. 즉,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저작권자 측에서 OSP에게 문제되는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하게 되면 이에 응하여 삭제를 함과 동시에 유저에겐 대응통지의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DMCA 제512조(g)). 이에 대하여 유저가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가 부당하게 삭제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대응통지로써 재게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자 측이 오인으로 삭제통지를 하였거나 유저 측

1) 1998년 10월에 개정하였으나, 시행은 2000년 10월에 되었기 때문에 새천년에 시작되었다하여 밀레니엄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 권리침해라는 것을 알면서 대응통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DMCA상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2]를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우리저작권법 제103조에서 저작권자가 자신이 권리자임을 소명하여 게시물의 삭제(복제 전송의 중단)를 요구하고 유저(콘텐츠게시자) 측도 정당한 권리자임을 소명하여 삭제된 게시물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권리없이 삭제나 재개를 요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구조와 유사하다. 그러나 우리법은 삭제통지 및 재개를 요구하기 위한 요건이 자신이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에 비하여, DMCA 제512조에 의하면 권리자는 권리침해를 이유로 삭제통지 할 때 유저의 저작물이용이 공정이용인지도 고려한 후 통지하여야 하고 유저 측은 공정이용을 근거로 재게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이는 삭제통지의 남용을 막기 위한 담보적인 조치로서, 초기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용행위가 주로 재현적 이용(dead copy)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여, 현재의 유저들의 이용행위가 웹 2.0을 기반으로 하여 창작적인 콘텐츠제작(UCC)활동이 많아진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DMCA의 규정은 저작권법의 목적, 즉 저작권자의 권리와 유저들의 공정한 이용간의 균형을 통한 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이라 할 만하다.

이하에서는 DMCA상 OSP에 대한 게시물의 삭제통지 및 대응통지의 요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실제 판례에서 이들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2. DMCA상 삭제통지 및 대응통지의 요건[3]

(1) 입법취지

미국의 저작권법은 제512조(c)(3)(A)에서 권리자 측의 '권리침해 주장의 통지(notification of claimed infringement)'(이하 '삭제통지'라 한다)의 요건을, 제512조g(3)에서 유저 측의 '재개요구의 대응통지(counter-notification)'(이하 '대응통지'라 한다)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디지털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로서 규정된 것인데, 그 내용은 권리자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저 측의 권리 내지 이익도 일정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것은 미국의 입법자가 DMCA를 제정할 때, "법안의 규정들은 잠재적인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과, 의지할 곳도 없이 자신의 게시물이 삭제당하지 않도록 하는 엔드유저(end-user)들의 합법적인 이익과의 균형을 도모한다"[4]는 입법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하 이

2) '부실표시'란 상대방에게 오해를 일으키는 말 또는 행동의 표시를 말한다. 표의자가 허위임을 알았던 경우, 진실이라고 믿지 않은 경우, 또는 진실여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reckless) 경우는 부실표시가 되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田中英夫『英米法辭典』東京大學出版會(2001), 560면.

3) DMCA규정의 번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우리 법제도에 맞게 의역한 것이다. http://www.copyright.or.kr/info/law/precedent_view.do?bd_seq=6974&cPage=4&CT_NO=4&CT_NO=4

4) Sen. Rep. No. 105-190 at 21 (1998). 김경숙, "UCC와 공정이용법리에 관한 미국 판례법리의 전개-렌즈사건을 통해 본 DMCA상 공정이용의 새로운 해석", 계간저작권, 2009년 여름호, 139면 참조.

들 요건에 대해 살펴본다.

(2) 권리자의 삭제통지의 요건[5)]

종래의 저작권 침해분쟁은 권리자측이 침해를 주장하면 이에 대하여 유저(피고) 측이 공정이용을 항변하는 형태를 취한다. 항변은 항변을 하는 측에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항변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6)] 그러나 웹2.0시대에 유저들의 저작물이용행위는 종래의 저작물 이용행위와는 그 형태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공정이용이라는 사실을 유저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은 유저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수 있다. 이에 DMCA는 (OSP에 대한 삭제통지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의 국면에서) 공정이용이라는 사실을 항변사유로서 유저들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작권자 측에서 삭제통지를 할 경우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고 있다. 저작권자 측의 삭제통지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DMCA 제512(c)(3) 저작권자측이 OSP에 게시물의 삭제통지를 할 때는 다음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A) 침해 주장의 통지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OSP에게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서면의 전달로 하여야 한다.

(i) 배타적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물리적이거나 전자적인 서명,
(ii)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저작물, 또는 단일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다수의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트의 그러한 저작물의 목록,
(iii) 삭제되거나 접근이 통제되어야 할 게시물(의 정보) 및 OSP가 그 위치를 확인하기에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
(iv) 권리침해 주장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연락가능한 정보,
(v) 유저의 게시물 이용이 저작권자 또는 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은 것이라는 성실한 믿음(a good faith belief)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 (밑줄은 필자)
(vi) 통지에 포함된 정보가 정확하며, 권리침해 주장자가 권리자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위증죄의 대상이 되는 진술

제512조(c)(3)(A)(v)에 의하면 저작권자 측이 삭제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유저의 이용행위가 자신이 허락(허용)하지 않은 행위이거나 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은 행위라는 성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권리자가 이용행위를 허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정이용과 같이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인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그 경우에는 삭제통지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최초로 다투어진 사건이 2007년의 렌즈사건[7)]인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것이 '공정이용'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3) 유저의 대응통지의 요건

위의 요건에 따라 저작권자 측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자신의 저작물을 삭제할 것을 OSP에게 통지하면, OSP는 즉각 이것을 삭제한 후 유저 측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아울러 유저가 대응통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DMCA 제512조(g)).[8)] 여기서 유

5) 이에 대하여는 김경숙, 전게논문, 134면 이하 참조.
6) 최승재, "미국에서의 디지털콘텐츠의 공정이용항변의 적용과 한계 - 유튜브(YouTube)를 둘러싼 일련의 소송을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2008년 겨울호, 50면.
7) *Lenz v. Universal Music Corp.*, 572 F. Supp. 2d 1150 (N.D. Cal. 2008).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김경숙, 전게논문, 122~144면을 참조.

저 측이 자신의 이용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대응통지의 요건은 제512조(g)(3)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DMCA 제512조(g)(3) 대응통지의 내용: 대응통지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OSP에게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서면의 전달로 하여야 한다.

(A) 유저의 물리적이거나 전자적인 서명,

(B) 삭제되었거나 접근이 통제된 게시물과 그것이 삭제되거나 접근이 통제되기 전에 있었던 위치,

(C) 그러한 삭제 또는 접근통제는 오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유저의 성실한 믿음(a good faith belief)이 있다는, 위증죄의 대상이 되는 진술,

(D) 유저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위에서 제512조(g)(3)(C)는 유저 측이 대응통지를 할 때는 "삭제 또는 접근통제는 오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성실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삭제 또는 접근통제는 오인으로 인한 것"은 전술한 제512조(c)(3)(A)(v)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유저가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았거나 법에서 허용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오인으로 삭제통지를 하였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유저는 당해 이용이 공정이용이라는 점을 대응통지 함으로써 자신의 게시물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 통지하여야 할 내용으로서 공정이용을 들고 있는 점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법상의 소명요건과 다른 점이다.[9]

대응통지는 저작권자가 OSP에 대하여 대량으로 게시물의 삭제통지를 하고 OSP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기 게시물을 삭제하게 되는 경우, 삭제된 게시물의 이용이 저작권제한사유에 해당할 때 유저가 소송 없이 간단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10]

(4) 부실표시에 의한 손해배상

저작권자가 공정이용인지에 대해 성실하게 살펴보지도 않고 삭제통지를 보낸다면 그것은 불성실한(in bad faith) 행동이며 이는 저작권법(DMCA) 제512(f)조의 부실표시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DMCA 512(f)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DMCA 512(f)부실표시 – (1) 게시물 또는 이용행위가 권리침해라는 사실, 혹은 (2) 게시물 또는 이용행위가 실수 또는 오인으로 인해서 삭제되거나 접근통제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질적으로 부실표시를 한 자는 그 부실표시로 인해 OSP가 그 게시물이나 이용행위를 삭제하거나 접근통제 하거나 혹은 그 삭제된 정보를 교체하거나 그 접근통제를 해제하는 등

8) 우리 저작권법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자에게 복제 전송의 중단 사실을 통보 할 때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저작권법 시행령 41조2항).

9) 저작권법 제103조(복제 전송의 중단)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하선은 필자)

10) Viacom의 TV쇼 일부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동영상을 게재하였던 Christopher Knight가 대항통지로써 결국 다시 자신의 동영상을 게재시킨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Christopher_Knight_(filmmaker) (최종방문 2010.12.31)

으로 인해 권리침 해자로 주장된 자[유저], 저작권자,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이용자 또는 OSP가 입은 소요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은 게시물 또는 이용행위가 권리침해라는 사실을 알면서 OSP에게 부실표시를 하는 유저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2)는 게시물 또는 이용행위가 오인으로 인해 제거 또는 접근통제 되었음을 알면서 부실표시를 하는 권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각각 규정한다. 여기서 권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이유에 대하여 법원[11]은, 512(f)를 규정한 목적은 삭제통지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만약 저작권자가 자신이 단지 저작권자인 것만으로 이러한 부실표시(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면 DMCA 512(f)조는 무용지물의 조문이 될 것이라고 한다.[12]

3. 삭제통지 및 대응통지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 렌즈사건

상기의 규정들, 삭제통지와 대응통지, 오인에 의한 통지에 근거한 부실표시에 관한 규정들이 모두 적용된 사건이 렌즈사건이다. 이 사건은 원고인 렌즈가 자기 아들이 프린스의 노래 "Let's go Crazy"를 배경으로 부엌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은 후 이를 유튜브에 업로드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후 저작권자인 유니버설음악사가 유튜브에 삭제통지를 보냄으로써 다음날 유튜브에 의해 당해 UCC가 삭제되었는데, 이에 대해 렌즈는 DMCA 제512조(g)(3)를 근거로 대응통지를 보냈다. 그 대응통지에서 자신의 UCC제작은 공정이용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UCC를 다시 게재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유튜브는 약 6주 후에 그 UCC를 재개하였다.

그런데 대개 유저들은 이와 같은 대응통지를 통하여 자신의 UCC가 재개되면 이에 만족하지만, 렌즈는 자신의 UCC가 재개된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저작권자인 유니버설사를 상대로 그 회사가 삭제통지를 할 때 유저의 이용행위가 "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이용행위라는 성실한 믿음 없이" 삭제통지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부실표시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였고(원고 승소), 이 렌즈사건을 계기로 권리자측은 공정이용인지까지를 고려하여 삭제통지를 해야 함이 명확해지게 되었다.

4. 결론 – 우리 저작권법에의 시사점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는 흔히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권리자 측은 OSP 측에 삭제통지를 함으로써 신속하게 이에 대응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공정이용을 고려하지 않고 삭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 유저들은 대응통지로써 자신의 콘텐츠의 재게시를 요구할 수 있으나, DMCA는 이에서 더 나아가 권리자가 삭제통지할 때의 요건으로서 유저의 저작물이용행위가 공정이용인지의 여부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입증책

11) *Lenz v. Universal Music Corp.*, 572 F. Supp. 2d 1150 (N.D. Cal. 2008).
12) 김경숙, 전게논문, 138면 참조.

임을 전환하여 삭제통지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게시물의 복제·전송의 중단(삭제)을 요청할 때는 자신이 권리자인 것만을 소명하면 되지만,[13] 유저 측은 자신이 권리자가 아니라면 소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14] 즉, 유저의 저작물 이용행위가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는 않았으나 권리제한사유(예컨대 인용)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자 측의 삭제통지로 인해 OSP에 의해 삭제된 경우, 유저는 정당한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없기 때문에(저작권법 103조3항 참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자신의 게시물(예컨대 UCC)를 재개할 수 있는 기회자체를 보장받지 못한다.

과거에 유저는 단순히 최종사용자 내지 소비자의 입장에 머물며 기존저작물의 재현적 이용자에 불과하였지만, 현재는 블로그, 위키, 동영상 공유와 같은 웹 2.0 애플리케이션 덕분에 유저들은 단순한 최종사용자 내지 소비자가 아니라 콘텐츠의 창작자가 되고 있다. 특히 유저들이 창작한 많은 콘텐츠(UCC)들이 패러디나 미술 등의 어레인지(arrangement), 리믹스와 같이 기존 작품으로부터의 변용적인 2차 창작인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행위가 원저작물 권리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권리자 측이 유저의 이용행위가 공정이용인지를 고려한 다음 삭제통지를 하고 유저 측도 자신의 콘텐츠가 부당하게 삭제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을 근거로 재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제도의 마련을 검토해 볼 만하다. 이로써 UCC의 창작 진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제도는 문화의 발전(저작권법 1조 참조)을 목적으로 하여 창설된 인공적인 제도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작권제도 자체가 주역이 아니라, 문화를 담당하는 자가 주역이고 저작권제도는 이노베이션 촉진의 조연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15]. 과거 문화를 담당하는 자는 전문 창작자였다면 현재는 평범한 유저들도 그 몫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지적재산법이 그 시대의 기술·산업·문화의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본문에서 검토한 DMCA상의 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3) 제103조 (복제 · 전송의 중단)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4) 제103조 (복제 · 전송의 중단)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 · 전송자가 자신의 복제 ·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 · 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 · 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15) 中山信弘「知的財産立国の更なる発展を目指して」ジュリスト1405号 (2010.8), 6면.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프랑스 정부의 '당근과 채찍' 저작권 보호 정책에 대한 소고

계승균 교수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프랑스 정부의 음악저작물 구입비용 지원

최근 2010년 10월 영국 BBC 방송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12~25세의 젊은이들에게 음악파일을 구매할 때에 국가가 보조해주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의 실행은 카드의 형태로 집행되는데, 카드의 액면가는 50유로의 가치가 있지만 이 카드를 구매할 때에는 25유로만 지급하면 된다. 그런데 이 카드는 음악 사이트에서 음악저작물, 즉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할 때에만 사용될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 카드가 1년에 약 2,500만 유로, 즉 100만개 정도 팔릴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이 카드의 사용기한은 1년이다. 그리고 개별 음악제공 사이트는 최대한 5백만 유로까지만 판매가 허용된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랑티켓을 연상하게 한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개인에게 특정분야의 저작물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아마도 프랑스 밖에 없을 것이다. '프랑스스럽다'고 말해도 될 정도이다. 프랑스의 자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은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프랑스 정부는 자국의 젊은이가 음악저작물을 불법적으로 훔치는 행위를 하는 것보다 일정한 보조 하에 적법하게 구매하도록,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작권자나 이의 대리인으로부터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렇게 대규모로 음악산업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므로, 음악파일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2. 유럽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프랑스를 비롯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경우, 서구 문화사를 이끌어 오고 있다. 법학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대륙법계라고 지칭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저작권을 단순히 영미법계처럼 복제를 할 수 있는 권리 내지 타인이 자신이 복제할 수 있는 저작물의 복제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작물에는 저작자의 인생관, 가치관 등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 즉 저자의 권리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다.

그래서 영미법계의 저작권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저작인격권이라는 개념과 저작물이 담겨져 있는 매개체에 대한 권리와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서로 분리하여 저작권법의 여러 곳에서 이 두 권리의 충돌을 예상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들이 권리소진원칙, 저작자의 저작물접근권, 추급권, 저작물파괴를 하기 전에 저자에게 미리 알려서 복제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하는 제도, 미술저작물의 원본소유자와 저작권자의 전시권 등이 충돌하지 않게 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저작물을 창작물이라고 하여 저작의 정신적 노동의 결과 및 저자의 개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는, 다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기는 하지만 저작물을 또 하나의 독립된 권리객체로 본다는 점에서 문화수요자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게 하는 것도 유럽의 저작권법제이다.

3. 프랑스 저작권의 역사 = 투쟁의 역사?

어떤 현상 내지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방법 중에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된다. 누적된 경험과 시간의 흐름을 통해 보통의 경우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믿기 때문이다.

저작권의 경우, 처음에는 저작권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구텐베르크가 출판기술을 발명한 이후, 서적과 악보에 대한 중요성과 출판물의 경제적 수익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 저작권제도의 시초라고 평가받고 있다. 즉 저자 개인의 권리라기보다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이 맞물려서 저작물에 대한 통제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전반적으로는 저작물은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이라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다가 18세기의 시민혁명을 계기로 정신적 노동에 대한 성과물에 대해서도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대두되어 저작권은 개인의 개별적인 권리로 승화되었다.

이런 생각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저작권법 내용의 강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작권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저작권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작권 확대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프랑스 저작권법을 비롯한 대륙법계 저작권법에 잘 나타나 있다.

4. 창작환경의 변화와 문화수요자의 반격

전통적인 저작물은 아날로그 기술을 바탕으로 창작되었지만, 지금의 창작환경은 저작권법을 제정할 때의 과학기술 상황과는 너무 다르다. 디지털과 네트워크라는 창작상황은 저작물을 더 이상 창작물로 보지 않고, '정보'라는 가치배제적 단어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창작물을 전승과 계승의 대상인 문화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제재 내지 수익재로서 보기 시작하였고, 문화를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교역하는 것이 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문화는 보존과 보전의 대상이 아니라 선전과 수출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인터넷이라는 환경은 접근의 용이함과 정보

의 교류를 미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작권자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반(反)저작권 운동 내지 기존 저작권자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운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20세기 후반부터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네트워크와 아날로그를 대체한 디지털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문화수요자의 저작권자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5. 문화공급자의 재반격 = HADOPI?

이러한 문화수요자의 반격에 대해 문화공급자 내지 창작자는 기술적 보호조치, 간접침해이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제한 조치로 재반격을 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프랑스에서 입법한 하도피(Haute Autorit pour la Diffusion des Œ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HADOPI)법이다. 이 법은 원래 2009년 7월 12일에 창작물의 보호를 위해서 제정되었지만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2009년 10월 28일에 수정된 법안으로 통과된 것이다.

하도피(HADOPI)법의 특징은 “Three strikes and you are out"(3진 아웃)으로 표현될 수 있다. 야구규칙을 연상시키는 이 제도는 인터넷에서 불법다운로드를 근절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게 되었다. 3진이라는 말에서 연상되듯이 단계적 제재(graduated response)를 특징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교육적인 과료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차 스트라이크를 선고받으면 경고메시지를 받고, 2차 스트라이크를 선고받으면 등기우편 경고와 함께 메일 경고를 받고, 3차 스트라이크를 받으면 1년간 인터넷 접속차단이 이루어진다. 법문에는 명백히 인터넷 접속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하도피(HADOPI)법은 이미 저작권 침해 특히 불법복제에 대항하기 위하여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DMCA)을 만든 미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에서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형사처벌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인터넷 접속을 차단시키는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헌법적 관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지, 기본권 침해, 적법절차, 민사상의 방해책임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저작권법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저작자를 비롯한 문화공급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6. 우리에게 제공하는 시사점

우리도 이미 세계적으로 경제대국이 되어 가고 있고, 무역을 중심으로 국가경제를 꾸려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무관심할 수 없는 입장이다. 특히 지적재산이 국가의 주요 경제재가 되고 있고, 국가 이미지 창출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의 보호, 특히 문화를 중심으로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주로 하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한 역사적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최근 들어 비로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하였기는

하지만, 인터넷이나 디지털 등과 같은 창작환경의 변화로 인해 저작권 침해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풍조가 아직은 만연하다. 일일이 구체적 사례를 들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우리의 경우 프랑스처럼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주는 하도피(HADOPI)법과 음악저작물 구입비용 지원과 같은 제도를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굳이 구입해서 입을 필요가 없듯이 이 제도 자체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음악산업과 다른 저작물 산업계를 생각해 보면 음악저작물 구입비용 지원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하도피(HADOPI)법도 실효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자에게는 환영받을 수 있지만 아직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실효성 여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도 문화를 산업으로 여기고 나아가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방향설정은 옳다고 판단되며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저작권제도의 활용을 통한 문화수요자와 문화공급자의 적절한 조화점을 찾아나가야 한다. 저작권제도도 전체적인 법규범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제도와 충돌하지 않아야 하는 면이 있다. 너무 이념에만 치우쳐 일방적으로 저작권자를 위한다든지, 또는 문화수요자만을 위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문화공급과 수요에 따른 적절한 접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규범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창작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견딜 수 있는 한계점은 어디인지, 창작환경에 따른 수익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저작권 보호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문화강국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우리에게 생각해 볼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해외조사 11-02

QUARTERLY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소유하고 있으며,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무단전재나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일부 내용을 인용하고자 할 경우 저희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고 저작권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 발 행 일 : 2011년 2월
· 발 행 인 : 이 상 벽
· 발 행 처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 기획·제작 : 조사홍보팀
· 등 록 번 호 : 마포-바-00061

종이
본 책자는 환경 보존과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지를 재활용한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